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 시행일(1999년 12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함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국적동포는 실명등기를 원할 경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검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전화:503-9320)으로 문의하기 바람

43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했음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하여금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재외동포는 국내부동산의 취득·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5. 금융 및 외국환 거래

5-1 재외동포는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가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음, 즉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 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음

1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적기준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함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음

-다만, 외국의 단기투자자금 (hot money)을 구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였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503-9277)로 문의하기 바람

5-2 재외국민은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거주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5-3 재외국민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휴대) 국내에 지급한(송금)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음

: 3개월 초과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6. 의료보험

6-1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체류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음

-특히, 유학생 등 비취업 장기체류자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없었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1년 이내 체류할 외국국적동포도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가입허용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6-2 재외동포는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유학생이나 국내 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의료보험가입절차 등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3-7570)로 문의하기 바람

7. 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7-1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각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4년분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음, 즉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음

-그러나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제한은 연금수급권 상실을 우려한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였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복지과(720-3628), 국방부 연금과(748-5361-4, 군인연금),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실(3703-2865, 사립학교교원연금)로 문의하기 바람

7-2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없음

-재외동포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면 보상금지급이 종료되었음

-또한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 수급권이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었음

-그러나, 유공자나 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보상금 수급권 상실을 우려하여 현지국적 취득을 포기하게 하고 현지정착에 애로를 겪게 하여 왔음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유공자나 그 유가족이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 보훈처 보상급여과(780-9493)로 문의바람

7-3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이미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연금 및 보상금 수령권을 회복하는가

-회복할 수 없음

-연금 및 보상금에 관한 재외동포법의 규정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에게만 적용됨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조항에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 즉 재외동포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이 아니라 동법 시행일 이후에 우리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을 의미하는 것임

-소급효과를 인정할 경우 기존 구령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신수령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임

7-4 각종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수령권이 승계될 경우 그 승계자는 어느 시점까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는가

-재외동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임, 즉, 재외국민으로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보상금 등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승계자가 승계권 발생당시 재외국민이어야 함.

-다시 말해, 보상금 등의 승계자도 승계 당시에는 재외국민이었다가 그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계속하여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8. 기타

8-1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 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조정함.

1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1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1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8-2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재외동포는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됨

1 국내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1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관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게 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함

8-3 재외동포도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내거소와 관계 없이 본적지 또는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신고를 해야했고, 대리임을 통해 인감신고 등을 할 경우 및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을 신고할 때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음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재외동포들은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외동포도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인감신고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로 하고, 인감신고시 재외동포의 신분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간편하게 확인함

-대리인을 통해 인감신고를 할 경우 등에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재외동포법 보완대책 홍보자료 (법무부, 1999-10-12)

1. 요지

1999년 12월초 재외동포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중국동포 등이 제외됨에 따라 중국동포 등의 불만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정부대책반>을 구성하고 1차로 중국동포 1세의 출입국 및 국적 취득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고국방문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중국동포의 출입국 및 국적 취득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고국방문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중국동포의 출입국 및 국적 취득 확대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2. 경과

○ '98. 12.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98. 8. 2. 법안 국회 통과

○ '99. 8. 31.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

- 대통령께서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들에 대한 보완책 강구 지시

· 재중(在中) 동포들의 한국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함

·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안정과 귀국보장,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강구

· 국내체류 조선족들을 우리 동포로 간주해 주기 바람

○ '99. 9. 2. 법률 공포

○ '99. 12. 3. 시행 예정

3. 대책

가. 국적취득 기회확대

(1)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허용사유를 7가지에서 9가지로 확대

국적법 및 하위 법령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 등 7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중국동포의 한국국적취득 허용사유를 9가지로 확대.

즉 ①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우리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계능력이 있는 중국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② 상훈, 경력, 기능, 자격 등에 의하여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도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2) 국내거주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에게도 한국국적취득 허용

국내거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만 한국국적취득이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에 형제자매들과 결합을 원하는 중국동포 및 그 배우자, 미혼자녀에게도 한국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3) '인도적 고려'에 의한 한국국적취득 확대

엄격히 해석하여 왔던 법령상의 '인도적 고려'에 의한 한국국적 취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나. 출입국 및 취업 기회 확대

(1) 단기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단기비자도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상 발급하였는데, 이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2) 상용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교역실적이 있어야 상용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역실적과 관계없이 상용목적이 인정되면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상용비자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1)(2)를 즉시 시행하기 위하여 상해와 심양에 영사를 각 1명 파견 완료하였음.

(3) 동포1세 고국방문 전면 허용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서는 고국방문 목적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하여 동포1세는 동포1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초청자가 없더라도 현지 대사관에 사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4) 친척방문 대상자를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55세 이상의 중국동포가 국내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만 인정되던 친척방문을 50세 이상자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방문시에도 인정하기로 하였음.

※ 연령 확대로 수혜자가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 친척방문 입국자 1년 체류 및 취업 허용

친척방문 입국자에게 신원보증인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고 취업자격구비 등 일정요건 해당자는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6) 중국동포 산업연수생 배정 확대 및 연수취업 유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중 중국동포의 비율은 15% 수준이고 연수수당은 월평균 50-60만원 정도인 것을 20% 수준으로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00년 4월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연수취업(F-8)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므로 중국동포가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임.

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배려

(1)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처벌면제 및 재입국규제 완화

재외동포법 시행 후 대대적인 특별자진출국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규제를 완화하며, 자진신고 한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하기로 하였음.

다만, 1992년부터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신고기간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결과 기대심리로 자진출국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자진출국신고기간 이후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 <준법관용 위법엄벌> 원칙을 세워 나갈 것임.

(2) 산재보험 해당자는 보상절차 완료시까지 체류자격 부여

산업재해보상 심사 청구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처벌을 면제하고 소송 등 보상절차 완료시까지 정식으로 기타체류자격(G-1)을 부여하여 안정적 지위 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정부대책반 운영

법무부 법무실장 주관하에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부, 산자부, 노동부, 경찰청, 중기청 등 관련기관 과장급으로 정부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임.

정부대책반에서는 중국동포지원 민간단체 지원방안, 불법체류동포 생활안정방안, 중국동포 포용정책 등 광범위한 관련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4. 이번 대책의 의미

가. 중국동포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확대, 중국동포 1세의 고국방문 전면 허용, 친척방문 확대 및 부분적 취업 허용 등은 중국동포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조치임.

나. 중국동포에 대한 혜택 확대로 소외감 해소

중국동포의 국적 취득, 출입국, 취업 기회 확대로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국동포의 소외감이 일부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함.

다. 동포1세에 대한 획기적 배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고난을 겪은 중국동포 1세는 고국방문 및 국적취득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음. 이는 역사적 시련기에 고난을 겪은 동포에 대한 보상적 조치임.

소위 재외동포특례법(안)의 검토

노영돈교수 (인천대 법대)

1. 서론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재외동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미국 200만, 중국 200만, 일본 70만, 구소련 45만, 캐나다 11만, 중남미 10만, 유럽 7만 등을 포함하여 약 550만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한편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의 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다음으로 세계 4위로 재외동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또한 전체 인구중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12%로 세계 1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재외동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기본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밀접한 주요국들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이주역사, 법적지위, 경제수준, 모국관, 사고방식, 집단별 이해관계 등이 서로 상이하여 우리 정부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재외동포들의 해외이주자는 조국의 역사와 운명과 매우 밀접한 것이어서 재외동포정책의 결정은 단순히 시의적인 편의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법무부는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는 1998년 8월 제출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의 수정안인 것이다. 이 특례법안은 당초 작년 6월 김대중대통령이 방미중 재외동포들과 재대담을 하고 귀국하여 법무부에 특별지시로 입안케 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어 왔던 것은 교민청설치와 이중국적허용의 문제였는데, 이는 주로 재미교포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선거지마다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곤 하였다.

지난 정권에서는 교민청설치문제는 기존의 외무부차관 주재의 '재외국민 정책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사업을 통합시행하는 기구로서 '재외동포재단'을 설치하였다. 이번 정권에서는 교민청설치 공약을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강화로 대체하고, 다름 한편 이중국적허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법무부

에 대한 특별지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안의 마련은 이미 일부 의원그룹이나 정당(국민회의)측에서 진행되어 왔었으나,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무부안은 입안과정상 기존의 것들과 연계없이 마련 제출되었다. 현재의 수정안이 재외동포의 한국으로의 출입국과 한국내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보다도 이 수정안이 중국동포와 구조련동포를 이 법률상의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관하여

법무부는 당초의 법률안 제2조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여, 전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하고, 후자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① 외교통상부로부터 혈통주의입법은 국제법원칙에 반하고 외교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② 국제관행도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③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는 것을 이유로 후자인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극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CIS) 동포는 정부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빌어 제시한 내용을 보면 혈통주의입법이 국제법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제법상 국적입법의 기본원칙으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각국의 국적입법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국적법의 차이에서 오는 이중국적 또는 무국적의 발생이 국가간의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각국은 나름대로 위의 두 원칙중 하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다름 하나를 보충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혈통주의 입법자체가 국가법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만약 혈통주의 입법이 국제법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 재외동포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하는 이 법률안 자체가 문제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포'라는 개념 그 자체가 혈통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

이다. 다만 한편 이 재외동포특별법(안)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한 혜택은 국민의 권리가 되어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중국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과 같이 외교마찰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민족국가인 중국이 소수민족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것은 국가의 대외활동에 있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중국의 이의제기는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의 권리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은 세계의 화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법제도와 국가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의제기는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의제기에 곧바로 위축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서글프게 만든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국가의 대외관계와 정부의 외교적 역량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소위 과거국적주의가 국제관행이라고 하는데, 즉 이는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국적취득 자국동포에게 출입국 등에서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터키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혈통에 의한 것을 부정하고 과거국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들 국가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혈통주의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에게 본국이 각종 우대를 주거나 심지어는 본국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도 많다. 즉 중국, 대만, 이스라엘, 일본, 그리스 등이 해당한다. 소위 과거국적주의라는 것을 국제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수긍할 수 없다.

3. 법률안 제2조의 규정형식

한편 이 법률안 제2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국 및 구소련의 동포들을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적'을 언제부터를 기점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능한 시점을 나열해 보면 ① 국적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 20일, ②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③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의하여 [국적에관한임시조례]가 공포된 1948년 5월 11일, ④ 현행 헌법 전문을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공포된 1919년 9월 11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관한 법무부 해설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는 '정부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하여 정부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국적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정부에 대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도 부적합하다.

이 문제는 법리상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처음으로 규정한 국적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국제법상으로는 우리 헌법 제2조 ①항에 의할 때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적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즉 우리 국적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1969년, 1971년, 1976년, 1997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성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인지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자의 범위가 정해져야만 이를 근거로 하여 그들의 국적변경이나 그 자녀들의 혈통주의에 의한 한국국적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확인받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며, 또한 상당수의 해외동포들은 만약 이러한 확인을 받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4. 결론

이 법률안의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외국국적동포를 결과적으로 5개의 분류로 세분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국적동포,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국적동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중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그것이다. ② 이하의 분류는 이 법률안의 일단 적용대상이 포함되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국내거소신고, 등 신고증의 발급,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과태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정부의 소관부처도 분산되어 있거나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술한 바와 같이 ①의 분류는 이 법률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는 중국 및 구소련동포가 해당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해외동포중 중국동포가 35.7%, 구소련동포가 8.1%, 그리하여 모두 약 44%, 즉 거의 반에 해당하는 해외동포가

이 법률안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 법률안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최초의 목적은 일반적인 해외동포 자체에 대한 모국의 애정 때문이 아니라 소위 IMF체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외동포(특히 재미동포)의 모국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법'이라는 형식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보는 시각이 결과적으로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다'고 한 셈이 된다. 그러나 딸을 시집보낼 때 한편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며, 또 가난한 딸이 나중에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가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모국으로서의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임을 자랑으로 여겨왔고, 바로 이로부터 오늘날의 분단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도출하며, 또 대한민국이 전세계 한민족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조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에 외국으로 진출한 다를 지역의 동포들은 대부분 그것이 자진한 것인 반면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는 한반도의 운명과 역사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정하거나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다. 요컨대 이 법률안은 이러한 국가이념이나 민족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며, 역사의식도 결여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중국 조선족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 우 길 (선문대)

1. 이 보고의 목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으로 약칭함)"에 대한 재중동포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 글은 이른바 '한국바람'의 영향으로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서술하면서 한국-조선족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둘째, 조선족 지식인들은 지난 10년간 한국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어떤 자기 인식에 이르렀는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재외동포법에 관한 조선족의 입장과 그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바라는 바를 유추해 볼 것이다.

2. 재중동포들이 중국내의 언론을 통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일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 또한 그들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나 구체적인 법안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보고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조선족의 입장은 그 법에 대한 그들 나름의 소박한 의견이거나, 필자의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고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최근 변화와 조선족 지식인 사회의 자기인식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재외동포법 및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정과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필자는 지난 10 여년간 한국과 재중동포와의 관계를 되돌아봄으로써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입장을 추론해 볼 것이다.

3. 중국 사회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 지 20여년 그리고 중국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지 10년. 중국 조선족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조선족의 한국 인식은 '한국꿈'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기대에서, 한국사람에 대한 半信半疑로, 이제는 "우리는 역시 중국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변해 왔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조선족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 사회 전체와 다른 소수민족집단도 개혁-개방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족 사회의 경우, 그 변화의 양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관찰된다. 민족정체성과 민족문화의 기반인 문화-경제공동체로서의 조선족 마을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른바 '한국바람' 또는 '한국병'은 인구유동을 가속화해 조선족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악화시킨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인구의 이동에 의해 생기는 민족집거지역의 공간이 한족들에 의해 메워지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점유율은 현재 약

40%에서, 21세기초 20%, 21세기말에는 1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이다. 이는 중국 대륙에 조만간 조선족의 집거지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한국방문 뿐 아니라 조선족이 한국 및 한국인과 관계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국바람'의 산물이라 한다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삶과 인식의 변화는 '한국바람'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4. 한국과 조선족 관계의 비극적인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페스카마號 사건(1996년 8월)이다. 온두라스국적의 원양어선에 승선한 조선족 선원 6명이 비인간적인 대우와 힘든 선상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동료선원 12명을 살해한 일이었다. 보고자는 이 사건을 "한국-조선족 관계의 성수고 붕괴 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이라고 부른다. 한국인과 조선족이 직접 만나기 시작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동안 악화된 상호 관계가, 비극적인 살인사건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주모자가 전직 중학교 교사였다는 점은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민족교육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5. 무엇보다도 조선족의 '한국꿈'이 깨진 것은 '조선족 사기피해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총 사기피해자의 수는 약 1만7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한화로 500억원을 넘고 있다. 이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국사기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인원은 조선족 사회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한국입국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인 이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자살 이혼 정신이상 사망 구속 밀항 매춘 등으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 버린 상태라고 한다. 사기피해사건은 가히 조선족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며 막대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낸 A급 태풍이라 할 수 있다.

6. 1996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문인들은 소설이나 수필 등을 통해 한국과 조선족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원망을, 한편으로는 조선족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국에서 발간된 김재국의 '한국은 없다', 허련순의 '바람꽃', 연길에서 발행된 류연산의 '서울바람' 등을 들 수 있다. 김재국은 한국인들이 중국 연수생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다면 그들이 귀국하면서 "만약 이제 전쟁이 다시 한번 난다면 난 총을 들고 선참으로 한국으로 와서 한국 놈들을 싸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며 한국사람-조선족의 관계가 동족이라기 보다 원수 사이로 악화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연변의 대표적인 작가 최삼룡은 "깨어지는 한국꿈, 누구를 탓할 것인가"라고 탄식하면서 "한국 양반들에겐 워낙 우리를 포용할 만한 담이 없는 것" 또는 "조선족을 포함한 배달민족의 담은 벼룩의 간처럼 작다"고 탄식하고 있다.

7. 조선족 지식인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한국과 관계를

맺고 상처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심각하게 묻고 있다. 이 물음은 그 동안 정을 붙이고 살아온 중국과 이제 막 고국이라고 다가온 한국 사이에서 "우리(조선족)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 머물 사람들인가"하는 문제였다. 이 논의는 1995년 봄부터 가을까지 조선족 일간지 중의 하나인 흑룡강신문에서 펼친 '우리 마음의 귀숙(歸宿)은 어디에'라는 지상(紙上)문화토론과 1996년 잇따라 발간된 조선족 문인들의 작품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초의 조선족 여류장편소설 '바람꽃'은 조선족을 "바람이 불어왔던 곳과 바람이 자는 그 곳, 두 세계 중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꽃"에 비유하면서, "언제나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한 곳에 대한 끊임없는 추억과 망각, 그리움과 원망의 갈등을 수없이 겪으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수없이 날아갔었다...두 세계에서 함께 공존했으며, 두 세계에서 함께 탈출하기도 했었다"며 고백하고 있다(허련순, 7).

7-1. "두 세계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물음이 바야흐로 조선족 지식인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 시도는 '남아준 정'과 '키위준 정' 논의이다. '한국의 없다'에서 작가 김재국은 "키위준 정이 남아준 정보다 더 크다"면서 "만약 한국을 나를 남아준 어머니라고 한다면 중국은 나를 키위준 어머니"라고 정리한다. "한국의 아들이자 중국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키위준 부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조선족이 처한 현실이다.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두 번째 시도는 정판룡 연변대 교수의 '며느리론'이다. 조선족은 "부도님 슬하를 떠나 중국으로 시집간 딸"로서, "시집은 이상 우선 중국 남편과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하고 친정집과는 좀 거리를 두어야 하며 시집의 가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조선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소재국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외국에서 온 이민들이 원래 속해 있던 자기 모국과 내통하여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는 마치 시집에서 자기 가문에 들어온 며느리가 계속 친정에만 마음을 두는 것을 꺼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족은 이중문화 혹은 이중성격을 띤 민족문화의 소유자로 변해, 그 문화도 재래의 민족문화의 특성 외에 중국문화의 특성을 점차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조선족은 이제 "중국을 자기 삶의 고장으로 여기며 자기 민족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 중국의 기타 민족들과 함께 중국의 강토를 개척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내외 적을 물리치고 공동의 대가정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으며 공동으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중문화 이중심리를 가진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전변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한반도의 조선족과는 다른 이중문화 또는 이중성격(이중정체성)을 가진 '중국의 조선족'이 되었음을 정교수는 분명히 하고 있다.

7-2 조선족에게 이제 "조국은 중국, 조선은 모국 또는 고국"이 된다. "단순한 법률관점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고 조선은 타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선반도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줄 뿐, 조선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는 데, 이는 조선족

은 중국사람이기 때문"이다. 흑룡강신문의 지상문화 토론 '우리마음의 귀속은 어디에'에 응모한 참가자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사람이다. 우리는 중국의 조선족이다. 우리는 중국사람이라는 운명을 선택하였다... 중국만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중국에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이 땅에 옮겼으며, 이 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현명한 소수민족이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조선족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흑룡강신문, 1995.4.1).

7.3. "중국은 조국, 한국은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족의 이중적 정체성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민족사무위원회 당시 주임인 김종국의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1992년 연변 거주 조선족 1천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조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간부(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종사하는)의 95%, 중학생 80%, 대학생 60%, 농민의 30%였으며, 평균 70%이상이었다고 보고된다. 보고자가 지난해 10월에 행한 서울 거주 조선족 유학생에 대한 제한적 의식조사에서도 "중국은 조국, 한반도는 고국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한 응답자는 35명중 31명에 달하였다. "한국은 조선족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대부분이 고국(29명)이라고 답했으며, 외국이라고 응답한 경우(4명)도 있었다. 한국에 생활하면서 "중국인임을 더 느끼는가, 아니면 한국인과 비슷한 점을 더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인임(27명), 한국인과 더 비슷함(5), 모르겠음(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국인임(국적)과 조선족임(민족) 중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인(18명), 조선족(14), 선후가 없다(3)라고 답하고 있다. 조선족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중국의 조선족에서 찾고 있다. 즉 "국적은 중국이며, 민족성분은 조선족" 혹은 "중국은 조국, 한반도는 고국"이라는 해답이다. 한국의 대중이나 관리들이 조선족들을 대할 때, 다민족국가 중국에서의 국가와 민족개념은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서의 그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면담한 한국 거주 조선족 유학생들이 "너희들은 중국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중국사람(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한국과 조선족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8. 재외동포법은 그 대상인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 및 舊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박상천 前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면서, "이 법의 제정은 모국인 대한민국이 재외동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재외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려운 시절

조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동포들을 다시 한번 내팽개치려 하는 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9. 조선족 사회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족 대중들은 "우리는 역시 다른 나라 사람이여.."라든지 "그래,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동포가 아니라면서..."라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나아가 "부자집으로 시집간 딸은 자식이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딸은 안 보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선족들은 또 이제까지의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동족이면서도 도대체 자기 몸으로 때워 돈을 좀 벌겠다는데 무엇을 그리 못마땅해 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2백만의 조선족사회도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이 어떻게 2천만의 북한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국이 통일을 주도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은 매섭다.

10. 조선족의 바램은 한국방문 및 노무수출의 문호가 개방되어 좀 더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사기 당할 위험이나 불법 체류의 고통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문호를 개방할 경우, 이 점에 대해서 중국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이 해외의 연고를 이용, 수입을 올린다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고 있는 까닭이다. 조선족 지식인들은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럴 경우, 중국 정부가 반대할 것임은 물론, 이제까지 중국에서 잘 살아온 조선족들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조선족이 바라는 바는 이중국적의 취득은 아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순조롭고 큰 변란이 없는 한, 중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11. 재외동포법은 중국동포와 독립국가연합(CIS)의 동포들을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에 중국 조선족을 제외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족의 국내 이주 가능성,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안보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중국 정부와의 분쟁 가능성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문호개방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제도와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기 피해와 불법 체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 제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기에 앞서,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법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다. 이런 고려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해외동포들, 특히 조국이 버리다시피 했던(棄民) 또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돌볼 수 없었던 중국 및 舊소련지역의 동포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는 문제와 더불어, 한국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느냐, 통일 후 북한지역의 동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한국정부는 조선족을 대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비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해 중국정부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조선족 정책에 대한 준거로서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을 적극 검토, 이에 상응하는 지위 권한 이익을 조선족에게 부여하는 경우, 중국 정부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해외의 연고를 이용해, 조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경제활동의 이점을 주는 경우, 반대할 이유는 적어질 것이다. 한국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배려를 중국정부가 화교에 대한 정책의 수준에서 고려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국정부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중국 조선족 사회가 격변기에 처해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족 사회의 붕괴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요요인으로 '한국바람'을 지적하는 데에도 큰 의견의 차이는 없다. 조선족 사회가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한국바람'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공동의 집'이 무너진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조선족은 한국과 직접관계를 맺은 지 10년 이제 나름대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의 현실인식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14. 중국 조선족 문제는 한반도통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과 조선족과의 관계는 한국의 주도로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경우 어떤 마찰이 발생할 지를 미리 보여주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광규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조선족은 '통일 선발대' 또는 '통일 전도사'로 고국을 찾았는데, 한국은 말만 앞세웠지, 전혀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선족 작가가 지적한 대로, "첫 조국통일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조선족의 만남은 실패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 한국이 조선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한국이 한반도 통일이후 민족국가의 시대를 넘어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질서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조선족으로 하여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제로섬 게임'의 심판자가 아니라, '윈-윈게임'의 매개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이나 재외동포정책이 제정-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보다 조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족이 바램은 한국 사람이 되는 것도,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고국과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15. 어느 국가나 재외동포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외동포가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고국이 재외동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출발함은 정당한 국가로서 상식적인 일이다. 이번 재외동포법의 제정은 앞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나, '고국에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동포만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그렇지 못한 동포는 제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법제정 의도였다는 점은 정부당국자들의 말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재외동포법을 "고국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명명하는 편이 법제정 의도에 좀 더 솔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국동포 최광범 수기

1권

나는 요새 곤경에 빠져 허덕인다. 8년이란 시간을 고국에서 체류하다나니 그동안 생활하면서 갖추었던 물건이고 받지 못한 임금, 주변사람과의 얼키고 설키고의 인간관계, 한시에 처리하고 떠날려니 참으로 답답해 미치겠다. 흐트러진 실타래와 같이 도무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 미치고 팔딱 뛰겠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나 갑자기 구속했던 사람은 이런 나의 어려움을 모를 거다. 한국사람 같으면 늦더라도 끝마무리를 잘할 텐데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도 아니고 죽을 죄를 저서 도망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서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지 답답하다. 나는 서울외국인 보호소에서 전화를 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뒤처리를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사람이 구속돼 있으니 생각처럼 수습이 되지 않았다. 물건이고 인부노임을 한국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전부다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근 2년이나 끌어온 노임청구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니. 어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담당자는 출국하라고 재촉만 할 뿐 문제해결이 되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한국사람들은 그러더라구요 “너 한국에서 8년 동안이나 벌었으니 중국에 돌아가면 부자처럼 살 것 아니냐?”고 하였다. 참으로 모르는 소리. 답답한 소리다. 나는 현재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만신창이가 된 이 몸뚱아리뿐이다. “이 미친놈아, 너 돈벌어서 계집질 술 먹는데 다 탕진해 버렸지?” 모두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렇다. 나 미친놈이다! 그럼 나 8년동안 살아온 미친 생활을 아주 솔직히 얘기하겠다.

91년 4월 24일 나는 아내와 같이 부푼 코리아 꿈을 안고 이 땅 고국에 왔다. 처음에는 야살만한 나라에 왔구나. 이곳이 내 부모님의 고향이구나. 눈부시게 발전했구나.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돌아가야겠구나.

온통 알락달락한 꿈이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이란 사회를 접하고 보니 살기 아주 힘든 나라였다. 아내는 일자리를 구하느라 온종일 설치고 다니고 나는 막노동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입국한지 2개월만에 아내는 식당일을 찾았다. 월급은 40만원이었는데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 괜찮은 편이었다. 나는 청량리시장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 “죄송합니다만 막노동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찾아 가야죠?” 아저씨는 전봇대를 가리키며 “전봇대에 붙어있는 인력광고를 보고 전화로 위치를 물어 찾아가 보세요”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고마운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인력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무실을 찾았다. 아주 큰 회사인지 알았는데 생각밖에 자그마한 사무실에 소파 몇 개 늘어놓고 한쪽 귀퉁이에 책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검게 탄 얼굴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이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신체가 좋으니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동안 약판 돈으로 작업복을 사고 청량리 부근에서 싸구려 여인숙 방을 얻었다. 친척집에서 챙길만한 물건을 가지고 여인숙에 왔다. 처음에 여인숙 방도 얻을 줄 몰랐는데 그것도 알고 지내던 한국친구(처음으로 사귀 친구)가 얘기해주서 얻은 것이다. 진영철이란 친구였는데 미아리에 사는 친척집에서 알고 지냈던 것이다.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장사를 하던 친척이 있었는데 진영철씨는 전봇대 광고를 부치며 돈을 벌었다. 가게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숙해졌다. 그동안 말동무가 없어 괴로워하던 참에 금방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친해졌다. 할 일 없이 매일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 화병날 것만 같았는데 잘됐다 싶어 그 친구 따라 전봇대 광고 붙이고 따라 다녔다.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한번은 자기 집에 놀러 가지는 것이다. 후에 안거였지만 청량리 부근에 사글세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같이 동거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나이가 20세 좌우였다. 저희 내외에게 잘해줬는데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는 아내가 다니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여인숙 위치를 알려주고 마중 나갔다. 일단 쿡구 명만한 방이라도 있으니 마음은 한결 나아졌다. 첫날밤을 내방에서 자자니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니까 들락거리는 문소리며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치는 고함, 이상아릇한 성관계 소리며 온통 난장판이었다. 그렇게 첫날밤을 뜯 눈으로 지냈다. 이런 광경은 난생처음이라 빨리 탈출하고픈 마음뿐이었다. 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 용역회사로 출근하였다. 젊은 사장님은 고맙게도 매일 일을 찾아 보내 줬다. 나는 그때 제일 힘든 것은 현장 찾아가는 일이었다. 간판이 온통 외래어라 뭐가 뭔지 어리둥절했다. 건축현장은 더했다. 쓰미, 시노, 요꼬, 반생, 오비끼... 온통 알아듣지 못한 말들이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건축현장에서 잡일을 하는데 콘크리트 반장이 나더러 땃빵을 가져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작정 “예”하고 대답하고는 발길을 옮겼다. 현장을 두리번 거리면서 땃빵이 뭐겠냐고 되뇌었다. 땃빵이라 땃빵이 뭐지? 누구한테 물으려니 교포라는 것이 탄로날까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갑갑했다. 일본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일본어 중에 땃빵이란 단어가 뭐더라 생각중에 철판을 연상했다. 무조건 철판을 찾았다. 아닌게 아니라 철판이 있어서 그것을 킁킁대며 그 무거운 철판을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콘크리트 반장이 아무 소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반장님, 땃빵이라고 하지 말고 철판이라고 해요 왜 우리말 뇌두고 외래어를 쓰십니까” 반장이 이상해 하는 기색을 내며 “중국서 왔지?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것 보니 분명 한국사람은 아니야!” 중국 교포라는 것을 들리고 말았다. 그 외 웃기는 에피소드가 엄청 많았다. 나는 건축현장을 전전해 가며 일을 했다. 나는 중국에서 교육사업에 평생 몸바친 아버님 슬하에서 성장했다. 학교 입학할 때는 한참 문화대혁명이란 정치운동에 열을 올릴 때였는데 공부하는 커녕 정치운동에 휩쓸려 아까운 학교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래도 다행히 엄하신 부모님 덕분에 남들과 달리 문화지식을 배워왔다. 1979년에 한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기민족의 문화를 좀더 익히기 위해 조선족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81년 7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조선족학교에 교사직에 채용됐다. 밤에는 사범학교 교

재를 열심히 배우고 낮은 열심히 교포삼세를 가르쳤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끝내 우수한 성적으로 사범통신대학을 졸업했다. 중국한자교육에서도 地區에서 0000로도 뽑혔었다. 그런데 대우는 공직자중에서 최하수준이었다. 쥐꼬리만큼의 봉급도 제때에 받지 못해 신혼생활은 찌들어진 고난뿐이었다. 부모님의 배려 하에 89년도 까지 참고 견뎌왔는데 한국행이 막 시작할 즈음 할머니를 모시고 고국방문을 하게 되었다. 3개월의 고행방문 기간 중에 고국의 많은 친지들을 찾아뵈는 동시에 고국산천의 화려한 변천을 돌아보게 됐다. 그때 나는 이곳이 바로 꿈에서 그리던 삶의 터전으로 간직했다. 고국방문을 마치고 한 1년 후 다시 아내와 같이 고국을 찾았다. 그때 큰애가 5세였고 작은애가 3세였는데 애들을 벌리고 떠났던 것이 8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애들과 전화통화 하면 남과 얘기 한 듯 할 때는 가슴이 아팠다. 애들에게 많은 죄를 졌다. 어려서부터 부모사랑을 못 받고 커 가슴이 찢어졌다.

1991년 늦가을 나는 어느 설비가게에서 고정적으로 일하게 됐다. 일당은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매일 일할 수 있어 마음이 안정되었다.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열심히 일했다. 남한테 게으르다는 소릴 듣지 않으려고 빨랑빨랑 설쳐댔다. 가게주인은 "너처럼 죽어라 일만하게 되면 3대가 노가다하게 된다"하였다. 가게 주인은 신축 건물로 가게를 옮기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모자라 쪼쪼 매었다. 나는 일시켜 준 것이 고마워 3개월치 노임을 미루어 받기로 했다. 그런데 3개월 후 가게 주인은 날짜를 속여 한달 노임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 일기책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들자 가게주인은 교포라고 신고해버린다고 포기하고 말았다. 저로서는 100여 만이 아주 큰 금액이었다. 그렇지만 신고할까 겁나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고국에 와서 처음으로 피해본 사례였다. 그때는 분하고 가게주인이 미웠지만 지금은 그 가게주인이 밉지는 않다. 그도 살기가 힘들어 그랬겠지 생각하고 만다.

아내는 열심히 식당을 다녔는데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되었다. 발은 온통 티눈투성이고 다리는 텅텅 붓고 몸은 점점 해쓱해졌다. 자리에 누우면 한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훌쩍였다. 애들이 보고싶어 매일 밤이면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더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여나, 우리 훈이가 이걸 먹으면 잘먹을 텐데..." 왜 그리도 애들이 보고싶은지 말로는 형용하지 못하겠다. 아내가 애들이 보고싶어 울면 나도 눈물이 절로 났다. 한국으로 떠났던 날 큰애는 할머니 옷자락을 쥐고 "엄마, 아버지 한국에 갔다가 빨리 와야돼" 작은 애는 3살 박이었는데 철이 없어 "엄마, 아버지 저녁에 와? 캄캄해지면 울꺼지? 난 같이 가면 안 돼? 응? 나도 같이 갈래 응..." 나와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그래 캄캄해지면 집에 돌아올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버지 기다려야 돼" 나와 아내는 길을 걷다 뒤돌아보고 가다 돌아보고 그때 왜 그리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꼭 주저앉아 영영 울고 싶었다. 매일 밤 나와 아내는 아이들 그리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면 밖에 나와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저기 보이는 둥근 달 지금 애들이 보고 있겠나? 보고 있으면 보일텐데..." 밤하늘을 한없이 쳐다보노라면 애들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만큼만은 잠시나마 애들 생각의 고통 속에서 헤어 나왔다. 시간만 나면 나와 아내는 북한산이고 도봉산이고 높은 데만 찾아다녔다. 남산타워는 수없이 올라 다녔다. 높은 데에 올라가노라면 애들이 보고 싶었다.

서울에 처음으로 노래방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애들 생각을 덜기 위해 수없이 노래방에 다녔다. "이별", "내 사랑 내 곁에", "귀국선", "개똥벌레" 등 곡목은 빼놓을 수 없는 곡목이었다. 지금도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 것만 같지만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다.

우리는 좀 모은 돈으로 욕실이 있고 난방시설이 괜찮은 옥상방을 얻었다. TV도 한 대 갖추고 소리도 들을 만한 카세트 한 대도 갖추었다. (사실 밤잠을 설치며 동네를 다니면 쓸만한 것을 주운 것) 살림살이도 제법 갖추어졌다. 주어진 장롱, 주어진 화장대, 주어진 옷가지들, 그대는 작업복을 살 줄 몰랐다. 동네 다니면서 입을 만한 옷이 많이 버려져있었는데 남들이 볼까 창피해서 밤에 몰래주었다. 깨끗이 빨아 입곤 했다. 그래도 그때는 돈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냥 즐거웠다.

세월이 가고 부지런히 일하고 한국사회를 적응함에 따라 점점 자본주의 사회를 적응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이념의 변화는 참 빨랐다. 처음은 생소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던 것이 점차 익숙해지고 좋게 느껴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점차 한국사람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1994년 여름 나의 인생에서 커다란 풍파가 일어났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크나큰 "사고"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나의 가슴 속 저 깊은 곳의 상처를 아프게 하지만... 솔직히 얘기를 들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얘기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심에 빠져 들 곤했다. 물어도 대답이 없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건강한 몸도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다. 때론 신경질도 부리고 나 몰래 담배도 피워댔다.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밤늦게 귀가 할 때도 있었다. 나는 애들이 보고싶어 그러는가 보다 하고 생활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용서해 달라는 똥똥지같은 말을 내뱉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아내에게 "자기와 나는 18세부터 알고 지내면서 당신이 안 첫남자는 나고, 내가 안 첫여자는 당신인데 뭐 못 믿겠어. 뭘 고민이 있으면 속 시원히 털어 내놓고 맘속 보따리를 풀어버리라"고 했다. 아내는 울먹이며 기막힌 사연을 털어 내놓았다. 아내는 매일과 같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다. 식당에 자주 다니는 손님이 있었는데 예의도 바르고 열심히 사는 젊은이라고 했다. 건축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쁘다보니 끼니를 거를 때가 종종 있었다. 끼니를 식당에서 해결할 때도 있고 시켜 먹을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숙해졌다.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니 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15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몇 만원씩 빌려 가면 신용 있게 갚아주곤 했는데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갚겠다는 날자는 자꾸 미루고 만나달라는 엉뚱한 요구만 해 왔다. 아내는 돈을 되돌려 받을 욕심에 만나 주었다. 번번이 돈을 갚지 않고 만나면 주라고 하니 짜증이 났다. 그는 아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해버린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3개월치 노임에 해당되는 차용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만나줄 수밖에 없었다.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할까봐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끝내 취중의 아내를 여관에 데려가 강간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내는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한참동안이나 멍하니 밤하늘만 쳐다볼 뿐 아무 말 못했다. 도대체 누굴 탓하랴 돈벌러 고국에 와서 아내의 순결을 빼앗기고 짓밟혀도 그 누구도 탓하지 못한다.

탓하자면 이 나라 찾아온 불법체류자 본인들이지!

얼마나 많은 교포여성들이 이와 같이 당하지 않았던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고 수년간 유린당한 교포여성도 있지 않았던가. 성적 요구도 모자라 돈 뺏고 담뱃불로 지지고 인간이 못할 짓을 저지른 인간도 있지 않는가. 나는 눈물을 삼키고 아내를 위로했다. 나는 그를 찾아 너죽고 나죽고 해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이사했다.

불법 체류자!

한 핏줄 한민족으로 언제 이 단어가 없어질는지..

나는 지금도 당당하게 코리안이라고 얘기한다. 누가 나를 차이니스라고 하면 노! 나는 코리안이라고 대답한다.

1941년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어린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중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이라는 표현보다 일제에 의한 강제 이주가 더 정확하다. 호적에 기재되어 있듯이 만주국 북안성 제 2개척단 8통 7반 소속이었으니 이민이 아니다. 경비가 삼엄하고 밤이면 마을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자유가 없고 일년 농사지으면 대부분 소작료로 일본인에게 바쳐야 했기에 나의 조부모님 등 가족은 친근한 이웃과 한밤중에 총탄을 무릅쓰고 도망 나왔다고 한다. 일본이 망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남북이 갈라지고 왕래가 자유스럽지 못해 40여년이란 긴긴 세월 속에 친척들의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외로이 타향에서 보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몰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면 향수를 달래시다가 끝내고 향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 묻히고 말았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7세 되는 해였는데 나에게 항상 들려주시던 말씀이 온통 민족의 의리였다. “손주야, 본이 뭐지? 고향주소는 어디라고 했지? 향렬은 무엇이지?” “본은 식녕 최가고 고향주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편촌리 913번지이고 향렬은 범자 향열이에요” 지금도 그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던 것이 생생하다.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남긴 건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높은 곳에다 묻어주시라는 것이었다.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향을 그렸다. 재중동포 사회 속에는 자기민족 언어를 모르면 크게 불효고 고국을 잊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그래서 중국동포0000 사람들은 한국말을 곧잘 한다. 타향에서 살면서도 궁지를 잃지 않고 민족의 혼을 이어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자기 나라를 잊었으면 오늘날의 재중동포가 존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동포 사회 속에서 현주소는 어떠한가? 200만 동포중에

만여명의 교포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고 통계자료에 나타났다. 중국의 총각들은 한족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요즘은 여성이 귀해서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현상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한다. 중국동포사회의 득과 실을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이점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교포사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 당국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시는 재중동포를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겪은 마음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재중동포들이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마음고생을 겪었을 것이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는 사랑해본 적이 없다. 아내도 나만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다. 아내는 한국에서 마음의 상처를 참아가며 일하다가 96년 여름 귀국했다. 지금 아내에게 다시 한국에 오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애들이 커가고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에 귀국을 선택했다. 나는 계속 남아 뒷정리를 하고 돈을 좀더 벌려고 마음먹었다. 중국의 급속도로 변화하는 물가로 인한 소비에 맞춰 좀더 벌 것을 작정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뭐든지 보고 배웠다. 기초 터파기부터 건물골조가 올라가고 끝마무리가 될 때까지가 각 분야의 기술을 익혔다. 주위사람들도 나를 많이 도왔다. 나는 도면 보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면 형틀에 흥취가 있어 그 분야의 기술을 중점으로 배워나갔다. 내손으로 직접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꿈이었다. 96년 봄 처음으로 의정부에서 연천에 사는 김씨와 같이 모작형식으로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일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풀렸는지 건축일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도면을 곧잘 봤는데 형틀일은 나보다 꼼꼼하지가 못했다. 성격이 온순해서 일꾼을 다루는데는 적절하지 못했는데 내가 일꾼들에게 많은 유도를 했다. 일은 그런데로 잘 풀려나갔는데 지층을 끝내고 기존 1층을 올릴 때 생각밖에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아파트 발코니 부분에 합판을 끼는 작업을 했는데 깔기전에 철 스포트를 6개 고여야 하는데 뒷일꾼이 4개만 고여놨 그것을 모르고 받을 디던 것이 화근이었다. 전라도 군산에 사는 정씨라는 친군데 3미터 높이에서 무의중에 추락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 되었다. 나는 재빨리 얼음물을 얼굴에 끼었었는데 정신차리며 하는 소리가 무릅이 아파서 죽겠다는 것이다. 나는 정씨의 양쪽다리를 비교해가며 손으로 살살만져 보았다. 왼쪽 무릎관절의 윗 부분에 손가락 굵기만큼의 깊이 단단한 것이 만져지지 않았다. 골절됐겠구나 생각하고 안전담당과 같이 병원으로 갔다. X레이 촬영결과 골절이 아니고 타박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름이 넘어도 걸음을 걷지 못하고 관절에서 주사기로 물을 자꾸 빼낸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고 당시 손으로 만졌던 일을 담당의사에게 얘기해드렸다. 담당의사는 CT촬영을 제의했고 그 결과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을 통해 쾌유됐다. 그 친구는 근 6개월을 입원을 해야 했다. 사고후 나와 연천 김씨와 갈라져 각기 도급을 맡아 하게 되었다. 독립으로 도급을 받아 하게되니 주민등록증이 필요했다. 노임계산 공사계약, 산재보험, 모든 것이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국친구의 도움으로 주민등록증을 얻게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바꾸고 현장에 제시해 한국인 행세를 해가며 건축일을 하게 되었다. 제시할 때는 가슴이 떨리고 겁이 났다. 주민등록증 없어 일을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세 때문에 고국에 체류기간중 죄인처럼 가슴을 죄이며 살아가는 재중동포들이 수도 없다. 재중동포

들의 조국이지만 불법체류자 신세 때문에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억압받고 신고당하고 불행이 줄을 잇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리민족, 한 핏줄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나는 신문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다. "한국인이 외국으로 인민을 가면 애국이다" 지금까지도 이 말을 이해 못 하겠다.

아무리 땅이 좁고 자원이 없다고 해도 타국으로 내보내려는 행위가 어떻게 애국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다. 못하는 자식이 부모품에서 좀 얻어먹는 다고 내쫓는다거나 불효라고는 하수 없다. 그것도 공짜로 얻어 먹는 것이 아닌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 재중 동포 정책은 너무 하다. 남북통일에 재중동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리적 위치나, 이념의 변화에 재중동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한국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옛날에는 백두산 천지, 길림성 일부분이 한국 땅이다."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은 사실이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맨날 옛적의 것을 들추기 보다 미래의(앞으로의) 아름다운 구상을 위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재중동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강승대국이 되면 간도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재중동포 사회의 경제력이 자연적으로 대한민국과 연결된다. 유럽이 국경선을 개방하듯, 대한민국과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동북삼성의 국경이 없어질 날이 꼭 올것이라고 믿는다. 굳게 믿는다. 2차 세계 대전때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고 갖은 행패를 부렸다.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한국은 무엇 때문에 코앞의 득익만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재중동포를 따뜻하게 감싸고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재중동포들에게서 확실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몽치면 강하다. 한민족이 몽쳐야만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잘사는 나라, 강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 이런 도리는 정부당국자가 더 잘 알 것이다. 나는 불법체류자이니 정책 이야기는 그만 하고 계속 가슴아픈 코리아 드림을 이야기하려다.

97년 초봄, 상계동 모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석동을 도급받았다. 아파트 지층 골조작업은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든다. 시공회사는 지층단가를 합리하게 정해서 도급을 쥐어하는데 대부분 회사는 그렇지 못하다. 지층에서 도급자가 적자를 보고 기존층에서 이득을 보려는 식이었다. 중간 도급회사의 횡포는 더욱 심했는데 최하도급자의 단가는 형편이 없었다. 인부들의 노임을 맞추려고 날림공사를 하는 것이 허다하였다.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품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매월 배당되는 금액은 인부들의 수준에 그쳤다. 품질에 신경을 쓰면 물론 시공회사의 호평은 받는데 수입이 노동의 댓가에 못 미치니 짜증날 때도 많고 포기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나는 상계동 아파트 지층작업에서 근 3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다른 팀들은 전부다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나만 남아서 작업을 계속했는데 떠나려고 해도 본전 생각에 떠나지 못했다. 내가 적자본 근본적 원인은 단층 회사에서 재하도급 받은 조00가 어려운 지층의 도급단가를 제대로 받고서도 나에게 준 단가는 기존층 단가를 제대로 빼먹고 공사를 포기해버렸다. 나는 기존층에서 충분히 적자를 없애고 2000여만원의 이윤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작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데 현장에 일이 또 생겼다. 건물이 한참 올라갈

때 시공회사가 부도났다. 도시 개발공사가 발주처였는데 적극적인 공사추진으로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노임을 보름 한달 미루어 주다보니 인부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물론 그 손해는 내가 다 본 것이었다. 97년 8월에 원청이 부도가 났는데 98년 2월에 하도급 업체까지 부도가 났다. 옆친데 덩친다더니 내가 그 꼴을 당한 것이다. 다른 하도급 업체가 끝마무리 공사를 했는데 나는 끝까지 같이 버텨주었다. 물론 사장님들의 칭찬은 받았다.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 볼 때도 있고 하니 경험삼아 다음 공사에서 재기해야지 하고 다짐했다. 15층 짜리 석동 형틀작업이 10개월 좌우에 끝날 것이 96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작업을 했으니 20개월이 걸린셈이다. 나는 이 공사에 노임은 한푼도 못벌고 2000여만원만 처넣었다. 98년 7월 용산구에서 아파트 3개동 형틀 도급을 맡게 되었다. 남들은 (IMF)일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나는 어쩐지 일감을 잘 찾았다. 말고 품질에 신경 썼기 때문에 공사를 준다는 것이었다. 용산 아파트 도급받을 때는 지층이 모두 완공된 상태에서 기존층부터 시공하게 되었다. 수입은 그런데로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일이 없어 난리칠 때였었는데 나는 인부5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다. 현장에 찾아와 "일 좀 합시다" 하는 사람을 선후로 5명을 채용했는데 일들을 곧 잘했다. 노임 날자가 되 새로 채용된 인부에게 통장온라인을 요구했다. 이상하게도 처음 채용할 때 쓰던 이름과 제시한 주민증 이름이 엇갈렸다. 이렇게 그들은 재중동포라는 사실이 탄로났다. 후에 안 것이었는데 그중 2명 인부가 같이 일하는 인부에게 20만원씩 주고 주민등록증을 산 것이라고 했다. 이중 한 명이 핸드폰을 가입하는 바람에 112에 신고되어 주민증위조로 구속되었고 나도 공문서 위조로 구속되었다. 구치소에서 4개월을 살고 2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인은 출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만 저희 재중동포는 또 다른 구속에 처해야 했다. "출소"하는 날 기분이 처음 구속되던 날 보다 더 괴로웠다. 10개월 간 구치소 생활에서 많은 배웠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고통을 참을 줄도 알도 인내와 기다림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인생을 참회하게 됐으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명상하게 되었다.

나는 구치소에서 출소되어 전화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물건과 살림살이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월 28일 급히 경찰서에 연행되는 바람에 방기를 현장 동료에 맡겼다. 그리고 현장노임도 책임져서 나대신 인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승주, 현재 검찰에 고발했음) 노임 천여만원과 근 1500만원 어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나는 지금 입을 옷도 없다. 8년 동안 나의 아픈 가슴을 달래 주었던 오디오 세트와 즐겨듣는 음반이 없어져 무엇보다 가슴이 아프다. 참으로 한심하다. 힘들고 고달프고 애들 생각, 아내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오디오는 나의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나는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 고발서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해도 담당자는 어렵다는 소리뿐이다. 나는 가슴이 미여지는데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으니 답답해 죽겠다. 노임을 찾아서 인부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잘 챙겨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그 외 97의 육군 조달본부 (시공

자 이범공영건설)에서 하청받은 군속 아파트 형틀시공 노임 청구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지, 자유가 없는 몸이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받지 못한 금액이 3600여 만원이나 된다. (원청회사에 6000만원 가압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소송을 근 2년 동안 끌어 왔는데 겨우 결론이 나올 때 구속되어 답답하다. 요즘은 강제 퇴거는 한가지, 밖의 일은 하나도 처리 안되고 있지.....[하늘이 무너지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집이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아내, 애들에 면목이 없어 돌아가고 싶지 않다. 거룩하신 하느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시오

나는 8년이란 세월 속에 많은 재중동포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저런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가슴아픈 일이 많았다. 나는 서울 외국인 보호소에서 김00라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중국 흑룡강 사람을 만났다. 3부 이자를 주고 끈 돈은 600여 만원 주고 밀입국 고깃배에 올랐다. 모두 72명이 배 밑창에 삐곡이 앉혀서 하루에 몇 알 안 되는 과자를 던져 주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아버린다. 배설물을 처리하는데 귀찮아서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칠흙 같은 냉동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모두들 떨고 있다.

흑간 통풍은 시켜주는데 너무 더워 진땀만 주줄 흘렸다. 72명 밀입국자중 몇모르고 올라 탄 동포여성 3명이 있었는데 배에 올라타자마자 밀입국 브로커들이 끌고 가 옷을 훌쩍 벗겨 버리고 밤낮 없이 강간을 (폭행)했다. 2명은 30대고 1명은 20대 초반인데 울고불고 애걸해도 브로커는 해적 마냥 사정없이 유린했다. 소변보러 나온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온종일 실오리하나 걸치지 못하게 했다. 강간당한 여자들은 소변보러 갑판으로 나오면 걸음을 건지 못해 브로커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다. 바다에서 밤새 항해를 하다 배가 그물에 걸려 배아령이 부서졌는데 예비부속이 없어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지나 가는 배에 구원을 청할 수도 없고 해상구조대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8일을 해상에서 보냈다. 식량이 없어 며칠 간을 굶어야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도 10일째 되던 날 부속을 다른 배에서 구해 고칠 수가 있었다. 11일째 되던 날 인천 앞 바다에 도착해 한참이나 허겁지겁 걸어서 어느 빈집 지하에 사람을 가두고 한사람 한사람 전화하게 해 돈과 사람을 맞바꾸게 한다.

한국에 입국하여 본전이라도 벌면 그런 사람은 그래도 행운이다. 많은 사람은 본전도 못 건지고 신고되어 집으로 강제출국 당한다. 김00는 빌린 돈도 못 갚고 검문당해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 연행돼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옮겨져 근 2개월만에 강제출국 당했다.

나는 9월 3일 밤 목동 출입국 사무소로 이송돼 간단한 절차를 밟고 첫날밤을 보냈다. 보호시설은 서울구치소보다 못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데 엉켜 있었는데 관리가 뒤죽박죽이었다. 구치소에 신문이나 책들을 마음대로 구독할 수 있었는데 보호소내에서는 금지였다. 밥만 먹으면 하루종일 누워있던가 서성거리야 했다. 간혹 급한 전화는 할 수 있었는데 적당한 운동도 없고 먹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 몸이 망가지기 일쑤였다. 나는 잠자리가 바뀌어서 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1시가 다 되었는데 26-7세 되어 보이는 연변 조선족 동포가 붙들려왔다.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구에게 신고되어 잡혀온 것이다. (일제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젊은이는 땅이 꺼지는 한숨만 내쉬었다. 입국한지 3개월밖에 안된다면 서 집에 돌아가면 빚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고 울음 섞인 어조로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있다"면서 마음을 넓게 먹으라고 타일러 줄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하도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길래 그만 자라고 했다. 그는 손에 불펜이 쥐어져 있었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가 불펜을 먹어버리고 병원에 가서 기회를 봐 도망가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보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 죽는다해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니 체념해버리라고 했다. 나는 그가 걱정되어 밤새 뜯눈으로 보냈다. 나는 9월 4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던 후 그의 소식을 못 들었다. 그 젊은이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추석 연휴 전날 밤 서울 외국인보호소내 6번방에 있는 재중동포 수명은 추석연휴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제의했다. 다른 방의 재중동포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추석연휴 단식농성은 시작됐다. 나는 다른 원인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밖에는 수천명의 재중동포들이 데모한다고 했다. (정확한 소식을 알고 싶었다)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신문에서 봤는데 서경석 목사님과 수명의 조선족은 8월 1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그 기사를 오래내 간직하고 있다. (서경석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수많은 교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서울외국인보호소내 재중동포들이 뭉쳐서 권리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만명 재중동포들이 뭉쳐졌으면 한다.

권리를 요구하고 곤경에 빠진 재중동포들이 이번에 출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6호방 농성자들은 하루 단식 농성하고는 포기해버렸다. 보호소측이 협조해 밀린 임금을 받아준다기에 포기한 것이다. 나의 마음은 씩씩했다. 어떻게 한두 사람 못 받은 노임 때문에 많은 재중동포를 끌어들이는 지 모르겠다. 감금된 재중동포 대다수는 밀린 임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거금을 쓰고 입국한 산업연수생이며 별의별 명목으로 입국한 딱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의 7호방에 길림성 요정시에서 온 41세 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잡혀 온지 하루밖에 안된다 한다. 추석연휴 때문에 서울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는데 그의 사연도 딱해죽을 지경이다. 그는 중국에서 회사에 다녔었는데 노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조금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아내의 노임으로 근근히 3식구가 생활해 나갔다. 주변에 학교에서 돈 벌어난 사람들의 유혹에 못 견디어 그도 신세 좀 고쳐볼까하고 1000여 만원(7만위안)의 거금을 3부 이자를 주고 빌려 고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 이는 사람이 없어 충청도 모 시골 마을에 산다는 친구가 소개한 아저씨 집에 묶게 되었다. 입국한지 2개월이 다 되었지만 일거리는 없고 달리 누구에게 구원을 청할 수도 없었다. 하루 하루 지겹게 나날을 보내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 연고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땅이 꺼지게 긴 한숨만 내쉬었다. 앞날이 캄캄한가 보다. 한방에 있는 외국인들 바라보며 "얼굴도 틀리는데 6년이 넘게 있을 수 있고 나는 한국인과 똑같은 얼굴과 언어를 지녀도 어째서 2개월도 못되어 잡히게 되느냐"며 부러워하

는 어조로 말을 했다. 나는 심정이 착잡했다. 왜 어머니 품에 돌아와도 반겨주지 않고 이렇듯 고통만 남겨주지? 자식이 못산다고 이렇게 천대를 해도 되겠는지. 나의 위치는 뭐야. 한국을 조국이라 하지 말고 타국을 조국이라 해야겠는지. 나는 중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이야? 머리가 빠개지도록 생각해봐도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 7개월이 지나면 새천년이 다가온다. 90년대 재중동포의 코리아 드림은 재중동포사회서든 한국근대사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천년은 재중동포에게 희망의 년대 고국을 사랑하는 년대, 활기찬 년대였으면 한다. 다시는 불행한 소식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10월 15일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기쁜 소식이 있다. 중국 홍콩강성에 사는 “쇼핑” 이석재 씨가 출소됐다. 그는 공사를 도급받아 하다가 한국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외국인보호소에 7개월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성남기독교 인권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해성 목사님의 배푸신 사랑으로 출소하게 되었다. 이석재씨는 2000여 만원의 노임을 못 받았는데 이를 아신 김해성 목사님께서 발벗고 나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나는 진심으로 김해성목사님께 감사의 드립니다. 서울외국인보호소내 정동주씨란 재중동포가 있다. 그는 교회로 가던 길에 경찰에 연행되었다. 98년 말 6-700만원의 거금을 쓰고 한국에 왔다. 빚을 채 청산도 못했는데 강제 퇴거될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했다. 박광남(72, 10, 19)씨란 재중동포도 거금 1400만원을 쓰고 98년도에 입국을 했는데 본전은 커녕 이자돈도 물기 바빴다. 그는 1차 입국할 때 800여 만원을 띄우고 2차에 입국에 성공했다고 한다. 출근길에 전철역에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됐다.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길복씨란 40세된 홍콩강 사람이 있는데 그도 1150만원이란 거금을 쓰고 작년에 입국했는데 본전도 못벌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져 있다. 입소하기전 구로동에서 살았는데 수년만에 만난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2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끝내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한국인 4명과 마찰이 생겨 신고돼 파출소에 연행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애걸을 했지만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기어코 파출소에 신고했다. 그는 앞날이 막막하다면서 한탄을 하고 있다. 사람이 정직하고 온순해서 현재 “쇼핑”으로 소내 외국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언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한 무기수를 만나게 되었다. 27세된 박일봉이란 재중동포 청년이었는데 3개월간 지내보니 꿈도 많고 활달하고 건강한 젊은이었다. 그도 코리아드림을 안고 이모부 등 친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 부풀어 오르는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열심히 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소박한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IMF한파로 일자리는 없고 현란한 세계의 유혹은 컸다. 함께 온 40대 중반의 이모부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국친구의 제의로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칠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한국 친구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1억 5000만원의 댓가로 이모부에게 부모를 살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일을 젊은이에게 알려주었는데 젊은이는 금전의 유혹에 못 이겨 천지불용적 살인을 저질렀다. 법은 0000다. 젊은이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중이고 이모부는

항소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에 입국한 재중동포들의 범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조직화된 범죄도 양산되고 있다. 재중동포들은 초기에 흩어져 살던 곳으로부터 집거하게 시작한다. 구로동일대, 신림동, 가리봉 등지는 재중동포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재중 동포들은 서로들 칼부림하고 술먹고 패싸움하고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기도 한다. 서울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중에 전문 도박판을 골라 털이하는 사람도 있다. 전부 불법체류다 보니 신고도 못하고 있다. 재중동포 불법체류가 사회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내 재중동포들이 서로를 감독하고 제재함으로써 사회가 정화되고 건전한 재중동포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막는다고 입국 안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밀입국자가 생기고 불행한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단속 됐다고 무조건 강제퇴거 할 것이 아니고 선별하고 처벌을 가하여 생산적인 재중동포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전 나는 전문입국 브로커와 통화한 적이 있다. 한국에 국적이 있는 사람인데 땀흘려 돈벌 생각은 하지 않고 불쌍한 재중동포들의 피땀을 활아먹고 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근 일인당 천만원 입국 비용을 받아 챙겨 한국 브로커(전문 초청장만 발급받음)에게 3-400만원씩 주고 초청장을 받아 중국에 들어가 선동하고 사람을 끌어들인다. 평균 한달에 5-10명 입국시킨다. 그녀는 그 대가로 1인당 백여만원 챙긴다고 한다. 이렇게 벌어먹는 사람이 많고 많다. 정부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유명무실하게 몇 다리 걸치게 되면 (중국 쪽 포함) 입국하게 될 사람에게는 천여만원의 거금이 들게된다. 그들은 직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모험이라도 해 본전을 빼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외국인보호소에서 각 나라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재중교포가 들어가는 입국비용이 제일 많다.

재중동포의 정책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얘기하고 싶다. 입국을 전면 개방하여 고비용 입국을 없앤다. 브로커들의 범죄조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재중 동포들의 악순환 되어왔던 거금들여 입국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국에 대한 고마움, 인생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고국에 좀더 건설적이고 향상적인 일을 찾아할 것이다. 미국은 불법 체류외국인이 근 500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노동시장이 파괴되고 못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다. 수많은 재중동포가 몰려올까 두려워 할 것 없다. 그중에는 한국현실에 적응되지 못해 돌아갈 것이며 또한 저비용으로 쉽게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나도 쉽게 한국에 재입국할 수만 있었다면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처자식, 부모형제와 떨어져 고국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삶의 터전이 중국이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물론 그와중에 삶의 터전을 고국으로 옮기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 조건을 붙이면 될 것 같다. 호적이 있는 가족이던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고국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던가 등등.. 고국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곧 그 사회의 일원으로 나라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재중동포들에 대하여 적당한 체류비(세금)를 징수하고 국내노동시장의 불안정에 응분의 자금을 마련하고 내국인의 생존에 최소한 지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거지가 일정하고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체류기간, 주거지 등을 관할 부문에 신고를 제도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강제퇴거든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불법체류를 악용하여 발생한 범죄도 원천적으로 막게되며 행정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범죄검거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교포서로를 감독하여 건전한 교포사외를 이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통일의 발판이 되어 고국 경제, 문화발전에 재중동포의 힘을 이바지 할 수 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200만 재중동포들까지도 등지게 해서는 안되겠다.

나는 교포들에게서 자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사람들을 보는 족족 죽이겠다" 재중동포 교포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반고국 감정이 만연해왔다. 정부당국서는 왜 이를 감지 못하고 불법체류단속에만 급급한지 모르겠다. 이제 제대로된 교포정책이 시행될 때가 됐다.

정부에서는 종종 이런 구실을 댈다 "중국정부에서 항의하기 때문에 재중동포를 해외동포 특례법에 포함시키지 못했다"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조상의 뼈가 묻힌 조국을 자유왕래하겠다는 데 중국이 반대한다고 동포가슴에 못을 박아서 되겠는가! 수많은 재중동포들이 물려올까 겁나면 정책이 부실하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 코막고 답답할 노릇이다. 200만 재중동포는 울려도 되고 정부(중국)과는 맞서지 못하겠다는 건가? 자기 나라 동포를 구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가. 중국 소수민족을 살펴보면 대다수 민족은 자기나라가 없이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족이란 민족은 엄연히 자기 나라가 있다. 그것도 고국땅 인근에 밀집해 살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화교에게 특혜법을 세워놓고는 왜 한국정부에는 간섭하는지. 나는 한국 정부가 부실하다고 본다. 속 시원하게 수많은 재중동포들이 물려올까 겁나 재중동포를 특례법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하는 편이 좋겠다. 200만 재중동포들은 숨을 죽여가며 88올림픽 개막식을 TV브라운관을 통해 관람했다. 동포들은 환호하고 기뻐서 눈가를 적셨다. 고국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더 없는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고국을 미워하고 분노한다. 가슴이 아픈 일이다. 나는 고국을 사랑한다. 언녕부터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8년이라는 시간을 고국에서 보내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다. 헌혈을 20여 차례나 했으며 골수기증 등록까지 해놓았다. TV를 보다가 혈액이 급하다는 광고를 보고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찾아가 헌혈을 한 적도 있다. 동네에서 문짝 손봐달라던가 하수도 막히거나 수도물이 새면 무료로 수없이 손봐주었다. 집수리도 무료로 수없이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이 나라 책임자들은 나를 강제 출국시킨다. 8년이란 세월 속에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느꼈다. 고국이 자랑스럽다. 재 다시 중국사회에 적응하여 살려면 힘들다. 처음 한국사회를 접하면서 고국이 싫고 탈출하고픈 생활이 어느 재중동포와 같았지만 세월이 가고 사회에 적응함에 따라 고국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 8년이란 긴긴 고달픈 시간 속에 고국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꿋꿋했던 혈육의 정을 이어나갔다. 나의 부서진 마음과 코리아드림을 고

국국민 정부 당국자가 치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불법 체류자라는 "쇠사슬" 때문에 수많은 불행을 낳는다. 길림성에 사는 엄성기라는 삶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엄성기씨는 아내와 여느 중국동포와 같이 코리아 드림을 안고 고국을 찾았다. 95년 가을에 입국했는데 비용은 1500여만이 넘었다. 저 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일 하려니 앞날이 캄캄했다. 방법없이 탈출하는 수 밖에 없었다. 두 달 남짓 일을 했지만 노임은 줄 생각하지 않아 이탈결심을 내렸다. 막상 노동판에 뛰어들었지만 일거리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여기 저기 노동판을 전전해가며 일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갈비뼈 5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3개월 치료 후 겨우 회복됐다 싶더니 우연케 교통사고를 당했다. 봉고차가 서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덮친 것이 엄씨의 발목을 깔고 지났다 발목뼈 골절상으로 근 일년이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엄씨의 아내는 어린 자식 생각에 못 이겨 어느 불법여권 브로커의 주선으로 300여만원의 거금을 주고 위조여권을 쥐게 되었다. 2차례의 중국입국이 발각되며 98년 말 추운 겨울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견디기 힘든 추위를 이겨가며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낸 끝에 99년 구정 전 강제출국 당했다. 옥중에서 쓴 편지는 엄성기씨의 마음을 한없이 쓰라리게 했다. 방바닥이라고 냉골(차가운 마루바닥)이고 난방은 형편없었다. 찬바람은 가냘픈 아내의 뼈속으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9년 9월초, 중국에서 엄씨에게 팩스가 왔다. 아내가 무릎통증 때문에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폐암이란 상상도 못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암세포는 이미 임파선으로까지 퍼졌다는 것이었다. 엄성기씨는 다급히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 출국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생각밖에 벌금 4500만원을 준비해오라는 것이었다. 엄씨는 보내온 팩스를 내보이며 사정했지만 진단서,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동시에 최소 200만원이란 벌금을 내야된다는 것이었다. 본전을 겨우 벌고 치료비도 막막한데 200만원이란 돈은 엄성기씨에게겐 거금일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엄씨는 불법체류 신고를 이용했다. 이는 사람에게(한국인) 부탁해 신고를 했다. 엄씨는 경찰에서 불법체류사실을 인정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넘겨져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돼있다. 그는 하루하루 초조히(안타깝게)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97년 여름,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상계동 모 건설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장 함바식당에 23살 되는 재중동포 아가씨가 일하고 있었다. 부지런하고 내성적인 아가씨였다. 그의 오빠가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함바 일거리를 소개했다. 한국인 친구는 한쪽다리를 쓰지 못했는데 아가씨를 집요하게 꼬셨다. 아가씨는 애인이 있기에 수차 거절했다. 한국인 친구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되어 강제퇴거 했다. 그 날 현장에서 일하는 교포6명이 같은 수난을 당했다. 그 중에는 입국한지 3개월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불법체류자라고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강제출국 시켰다. 그때 강제출국시킨 재중 동포 중 3명은 재입국하여 건설현장을 전전하고 있다. 법이 재중 동포의 길을 어떻게 막아도 그들은 무슨 방법이든 써서 다시 입국한다. 재입국의 주요수단은 밀항이다. 생명의 위협이 그들에게 고이자 내고 빌린 사람의 시달림보다는 편하다고 느낀다. 입국의 길을 개방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불행을 막을 수 없다. 중국에 북한 밀입국자가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도 그들은 동북삼성에 살고 있는 재중동포가 있기 때문에 발붙일 때가 있다. 그들은 재중동포의 도움으로 주식을 해결하고 돈을 번다. 근래 들어서 많은 재중동포 총각들이 북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다. 최근 입국한 재중동포의 말에 의하면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모 지방에서는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면 호적을 올려주고 보조금 2000위안을 준다고 한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많은 재중동포들은 선량하고 근면하다. 극소수 악질들이 인신매매에 종사하고 있다. 같은 동포를 불구덩이에 처넣는 행위에 대다수 재중동포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 악질들은 언젠가 법적 제지를 받을 것이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김길복씨는 치를 떨며 인신매매자를 규탄한다. 김길복씨의 조카도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한다. 5000위안을 주고 인신매매단에게서 사왔는데 착하고 예쁜 때가 묻지 않는 탈북 여성이라 한다. 결혼식 날 조카가 많은 하객 앞에서 5000위안을 아내에게 쥐어주면서 “나 비록 당신을 5000위안을 주고 사왔지만 나의 아내가 되어주고 결혼식까지 치른 마당에 이 돈으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형제에게 주던지 당신이 쓰던지 하라”고 말했다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표시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없을 것이다. 조카의 아내가 된 탈북 여성은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설새없이 뛰어 놀았다 한다. 하객들은 신부가 땀을 줄줄 흘려가며 설새없이 뛰어 노는데 걱정의 어조로 좀 쉬라고 해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며 어린애처럼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 우리 민족처럼 불행한 나라는 없다. 남북이 갈라지고 동포가 뿔뿔이 흩어져 사는 불행한 나라는 없다. 원인은 한마디로 힘이 없고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뭉쳐야 된다. 뭉쳐야만 민족의 혼이 살아남는다. 이 땅에 재외동포불법 체류자가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날이 꼭 올 것이라 믿는다.

1999년,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운동

- 국내 성명 모음
- 해외 성명 모음
- 관련 기사 모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성명 참여 단체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광주시민연대 / 교통문화운동본부 / 나눔의집 / 나와우리 / 대한불교청년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개혁국민연합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볼런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서울장애인연맹 / 열린사회시민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재외한인학회 / 전대협동우회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럼2001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한국어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상 가나다 순, 총49개 단체)

■ 수 신 김대중 대통령

■ 제 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성명

■ 일 시 1999. 8. 3 (화)

■ 연 락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담당 : 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1. 국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2. 현재 정부(법무부)에서 입안되고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사회(재외동포수 약 554만명으로 추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사과정,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과정도 없이 이미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3.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재외동포의 개념규정 부분입니다. 즉 이 법안 제2조 제2항을 보면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소련지역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해외동포들이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법률안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근본취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의 법률안대로라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부자나라 동포(특히 재미동포)들과 가난한 나라 동포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이에 동 법률안이 동포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올바른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별첨’과 같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각 당과 대통령께 전달하오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성명

우리는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이 법의 입법화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사회와 국내의 관련단체,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주목과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예전에 이미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경우 형평성 등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입법취지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법안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재외동포의 개념규정 부분이다. 즉 법안 제 2조 제2항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소련지역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 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 명의 재외동포들을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에 관한 법무부 해설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CIS) 동포는 ‘정부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이라고 하여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정부에 대한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처음으로 규정한 국적법이 1948년 12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이후 1969년, 1971년, 1976년, 199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에도 최초의 대한민국국적자가 누구인지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고려한다면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확인 받는 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재외동포들은 만약 이러한 확인을 받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정부도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나 노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1998년 8월 첫 법안 제출 당시에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여 전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하고, 후자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했다가 이후 중국 측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1998년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하였다.

법무부는 소위 ‘혈통주의’가 아닌 ‘과거국적주의’가 국제관행이므로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을 수정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법무부가 과거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예로 들고 있는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터키의 경우, 과거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특례를 제공

하고 있지만 국적법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혈통주의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논리는 허구라 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 대만, 이스라엘, 일본, 그리스 등과 같이 혈통주의에 의하여 외국국적동포에게 각종 우대를 주거나 심지어는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도 많다. 우리의 혈통주의적 동포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중국은 세계의 화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법제도와 국가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의제기는 자가 당착적인 것이고 중국의 이의제기에 곧바로 위축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비자주적인 수치스러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외동포의 수는 미국 200만명, 중국 200만명, 일본 70만명, 구소련 50만명, 캐나다 11만명, 중남미 10만명, 유럽 7만명 등을 포함하여 약 5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다수 동포의 이주시기가 대부분 조선말에서 일제 식민지시기이고, 이주사유 또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정치적 망명 또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법률안이 이중국적취득에 대한 법률안이 아닌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문제의 이 법률안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현재대로 입법화된다면 결과적으로 못사는 동포, 잘사는 동포를 차별하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될 것이다. 게다가 550만 해외동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이 각국 동포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상과 같은 결정적인 결점을 지닌 채로 이미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각국 해외동포사회의 평화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국회에서의 본 법안추진에 대응하여, 범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적용 대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에서 ‘한민족 혈통의 모든 외국국적 동포’로 확대하는 법안 수정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셋째, 각국 해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국내 관련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등 국회 논의일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동포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해외동포 및 시민 서명운동, 올바른 법안통과를 위한 입법캠페인, 헌법소원제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9. 8. 3.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광주시민연대 / 교통문화운동본부 / 나눔의집 / 나와우리 / 대한불교청년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개혁국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린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서울장애인연맹 / 열린사회시민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재외한인학회 / 전대협 동우회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럼2001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성명 참여 단체

건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광주시민연대 / 교통문화운동본부 / 나눔의집 / 나와우리 / 대한불교청년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개혁국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린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서울장애인연맹 / 열린사회시민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재외한인학회 / 전대협동우회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럼2001 / 한국교총장애인협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상 가나다 순, 총49개 단체)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성명

■ 일 시 1999. 8. 3 (화).

■ 연 락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 International Network)
담당 : 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보 도 자 료

정부추진 해외동포특별법, 부자나라 동포들에게만 법적지위 부여 법무부 법안, 재중, 재러, 재일 조선국적 동포들 적용대상에서 배제 49개 시민사회단체 동포차별 독소조항 폐지 촉구 연대성명

1999. 8. 3. 화

1. 49개 시민사회단체(연락단체 KIN)는 8월 3일, 정부에서 입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이 법안의 대상에서 재중, 재러, 재일 조선국적 동포 등 전체해외동포의 약1/2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내용의 철회와 해외동포와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공개적 토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각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에 발송했다.
2. 49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제2조 제2항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

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소련지역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제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해외동포들을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49개 단체들은 “이 법률안이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근본취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안대로라면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부자나라 동포(특히 재미동포)들과 가난한 나라 동포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법적용 대상동포를 ‘한민족 혈통의 모든 외국국적 동포’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이 법안이,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사회(재외동포수 약 554만명으로 추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실사과정 없이,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미 법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각 국 해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국내 관련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등 국회 논의일정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4. 이 공동성명의 주관단체인 KIN은 해외동포단체 연대성명 및 시민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

※ 별첨 1. 4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

별첨 2. KIN 소개

<별첨2> 국회본회의 통과 재외동포법, 시민사회단체 대통령거부권요구 요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정개혁에 노고가 크십니다.

550만에 이르는 해외동포가 지구촌 곳곳에 퍼져 살면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까지는 이들에 대한 모국의 지원이 변변히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 해외동포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의 해외동포정책이 한단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라 할 수 있는 550만 해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절차도 정당성을 결하고 있어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합니다.

1. 우선 이 법안은 550만 해외동포의 과반수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안 2조 2항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 소련지역의 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 러시아 동포들의 상당수는 우리민족이 수난을 당하던 일제시기, 만주 등지를 배경으로 항일투쟁을 했던 독립투사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나라 건국의 숨은 공로자들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배제한 해외동포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법적 독소조항이 부자나라의 동포들만 우대하고 가난한 나라의 동포들은 차별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해외동포들을 모국이 지원하지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측은 ‘중국당국의 반발’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만, 화교정책 등 자국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를 주고 있는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지언정, 입법 대상에서 과반수의 재중 재러 동포들을 제외한 채로 법을 제정할 합리적인 명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이 법의 제정과정 자체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라 할 수 있는 550만 해외동포들의 의사수렴 없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고, 해당상임위 역시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해외동포사회의 여론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배제될 재중, 재러 동포들이 의사를 피력할 이렇다할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해당부처의 자의대로 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입법부가 처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국회와 법무부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6월4일, 8월3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을 발표, 법안의 독소조항과 입법절차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뒤늦게 법무부 관계자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소장,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간의 면담이 있었고 이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으나 8월 11일 상임위에서, 8월 12일은 국회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표단은 해외동포 개념을 재외동포재단법의 예에 따라 “한민족혈통을 지닌 자”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과거국적 개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8월 11일 법사위과정에서도 조순형 안상수 의원등이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 통과가 강행되었습니다.

대통령님

550만 해외동포 가운데 300만에 가까운 재중, 재러, 재일무국적동포 등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해외동포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입니까? 이 법이 이토록 독소조항을 가진 채로 동포사회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되어 발효되게 된다면 동포사회 지원을 핑계로 해외동포의 국내투자를 노리는 졸속입법이라는 동포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재중 재러 동포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에 기초해서 본 법안이 재론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 8. 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들과 관련 시민단체들 명동성당 무기한 단식농성시작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 목 '재외동포법' 국회본회의 통과와 재외동포농성단 명동성당 무기한 단식농성
- 일 시 1999. 8. 13 (금).
- 연 락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담당 : 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보 도 자 료

정부추진 '재외동포특별법', 독소조항지닌 채 국회본회의 통과 통과법안, 재중, 재러, 재일 조선국적 동포들 300여만명 적용대상에서 배제 법무부안, 49개 시민사회단체요구 수렴없이 8월 12일(목) 본회의 통과

1999. 8. 13. 금

1. 49개 시민사회단체(연락단체 KIN)는 8월 3일, 정부에서 입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과 관련, 이 법안의 대상에서 재중, 재러, 재일 조선국적 동포 등 전체해외동포의 과반수(약 300여만명)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내용의 철회와 해외동포와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공개적 토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각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에 발송한 바 있다. (별첨 1 참조)
2. 시민사회단체의 8월 3일 입장발표 이후, 이 법안은 8월 6일 법안심사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49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가 주장한 해외동포사회의 의견수렴, 동포차별 조항 수정,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마련 요구를 외면한 채, 8월 11일 국회 심사소위통과와 상임위원회통과에 이어, 8월 12일(목)에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3.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관련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이하 재외동포농성단)을 조직, 명동성당에서 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했고, 현재 수십명의 재중동포들과 관련단체의 대표들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재외동포농성단은, 국회본회의 통과된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통령거부권요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8월 13일 재외동포농성단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거부권행사요청서)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서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별첨 2 참조)
4. 재외동포농성단은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대집회를 14일(토요일) 12시, 명동성당에서 가질 예정이고, 15일(일요일) 오전 12시부터 인사동 전역에서 재외동포법제정반대캠페인(사진전시전, 재외동포퍼포먼스, 시민연대서명 등)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국회통과 재외동포법 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 공동성명

우리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은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관련,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이 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전달하고 긴급히 통과된 법안의 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사회와 국내외 관련단체,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주목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8월 12일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안은 550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절차도 정당성을 결하고 있어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선 통과된 법안은 550만 재외동포의 과반수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안 2조 2항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 소련지역의 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재외동포들이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들 중국동포, 러시아 동포들의 상당수는 우리민족이 수난을 당하던 일제시기, 만주 등지를 배경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독립투사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나라 건국의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백만 재외동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재외동포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외동포들을 모국이 지원하지는 이 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치졸하고 몰염치한 일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측, 그리고 법안심사 국회의원들은 '중국당국의 반발을 핑계로 삼아 수백만 재외동포가 배제되는 동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화교정책 등 자국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를 주고 있는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저자세로 대응한 과정의 면면은 대다수 재외동포사회의 분노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 재외동포농성단은 법의 제정과정 자체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음을 온 국민과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낱알이 밝히고자 한다.

국회통과된 법안은,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라 할 수 있는 550만 재외동포들의 의사수렴 없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회의 법안심사과정 역시 재외동포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재외동포사회의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특히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배제될 재중, 재러 동포들의 의사를 수용할 이렇다할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았고, 재외동포주관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자의대로 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입법부가 독소조항 수정없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6월 4일, 8월 3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을 발표, 법안의 독소조항과 입법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책마련을 긴급히 촉구하였다. 지난 8월 10일 뒤늦게 법무부 관계자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 운영위원 - 중국동포의집 소장,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간의 면담이 있었고 이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으나 8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8월 12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어 버렸다. 당시 대표단은 재외동포개념을 재외동포재단법의 예에 따라 "한 민족혈통을 지닌 자"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해당 법안심사위는 과거국적 개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8월 11일 법사위과정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 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 통과가 강행되었다.

우리 재외동포농성단은, 550만 해외동포 가운데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중, 재러, 재일무국적동포 등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재외동포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온 국민과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 법이 이토록 독소조항을 가진 채로 동포사회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되어 발효되게 된다면 동포사회 지원을 핑계로 재외동포의 국내투자를 노리는 졸속입법이라는 동포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특히 재중 재러 동포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행위가 아닌지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우리 재외동포농성단은, 이상과 같이 결정적인 결함을 지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550만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평등한 재외동포법제정을 위해, 정부부처, 해외동포사회와 국내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법제정논의기구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은 동포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범국민·해외동포서명운동, 법제정반대캠페인, 헌법소원제기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9. 8. 14.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독소조항 지닌 채 국회통과한 재외동포법안, 범시민사회단체들 철회 요구,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범국민캠페인

- 문서번호 KIN-990816
- 수신 각 언론사, 방송사 사회부 기자
- 발신 재외동포법철회공동대책위준비위원회
- 제목 「17일(화) 재외동포법철회요구 범시민단체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의 건
- 일시 1999. 8. 16 (월).
- 연락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담당 : 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보 도 자 료

정부추진 재외동포법안, 독소조항지닌 채 국회본회의 통과

통과법안, 재중, 재러, 재일 조선국적 동포들 300여만명 적용대상에서 배제
재중동포들 및 관련시민사회단체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5일째 단식농성중
전세계 해외동포단체들 대통령거부권촉구캠페인 동참 시작

1999. 8. 16. 월
1.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긴급 보도협조 요청드립니다. 국회통과된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관련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와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이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추진과정 및 근본적인 법안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전합니다.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긴급하게 보도협조 요청드립니다.

- 시간 : 1999. 8. 17(화). 오전 10시
- 장소 : 명동성당입구 단식농성장
- 주최 : 재외동포법철회공동대책위준비위원회

서울조선총교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2. 문의 :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담당 : KIN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국회통과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6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우리는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관련,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이 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전달하고 긴급히 통과된 법안의 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사회와 국내외 관련단체,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주목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8월 12일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재외동포법안은 550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절차도 정당성을 결하고 있어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선 통과된 법안은 550만 재외동포의 과반수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안 2조 2항은 외국국적동포의 개념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를 한 중국동포(조선족) 약 200만명, 구 소련지역의 동포(고려인) 약 50만명,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약 15만명을 포함하여 정책대상의 과반수가 넘는 수백만명의 재외동포들이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들 중국동포, 러시아 동포들의 상당수는 우리민족이 수난을 당하던 일제시기, 만주 등지를 배경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독립투사들의 후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나라 건국의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백만 재외동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재외동포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외동포들을 모국이 지원하지는 이 법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몰염치한 일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안심사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측, 그리고 법안심사 국회의원들은 ‘중국당국의 반발을 핑계로 삼아 수백만 재외동포가 배제되는 등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화교정책 등 자국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를 주고 있는 중국에 대해 자주적인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저자세로 대응한 과정의 면면은 550만 재외동포의 분노와 4500만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법의 제정과정 자체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음을 온 국민과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낱알이 밝히고자 한다.

국회통과된 법안은,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라 할 수 있는 550만 재외동포들의 의사수렴 없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고, 국회의 법안심사과정

역시 각 국 재외동포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재외동포사회의 최소한의 여론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특히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배제될 재중, 재러, 재일 동포들의 의사를 수용할 이렇다할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았고, 재외동포주관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자의대로 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가 독소조항 수정없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6월 4일, 8월 3일 양일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을 발표, 법안의 독소조항과 입법절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책마련을 긴급히 촉구하였다. 지난 8월 10일 뒤늦게 법무부 관계자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 운영위원 - 중국동포의집 소장,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배덕호 사무국장)간의 면담이 있었고 이 법안의 내용과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했으나 8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8월 12일은 국회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어 버렸다. 당시 대표단은 재외동포개념을 재외동포재단법의 예에 따라 “한민족혈통을 지닌 자”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해당 법안심사위는 과거국적 개념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없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8월 11일 법사위과정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 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안 통과가 강행되었다.

우리는 550만 해외동포 가운데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중, 재러, 재일동포 등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재외동포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 온 국민과 전세계 재외동포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 법이 이러한 독소조항을 가진 채로 동포사회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되어 발효되게 된다면 동포사회 지원을 핑계로 재외동포의 국내투자를 노리는 졸속 입법이라는 동포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특히 재중 재러 동포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우리 6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상과 같이 결정적인 결함을 지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550만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다음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평등한 재외동포법제정을 위해, 정부부처, 해외동포사회와 국내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법제정논의기구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포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재외동포법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해외동포 단체 및 인사들의 서명운동, 법안 철회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법 발효 시 문제의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개정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1999. 8. 17(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광주시민연대 / 광주인권지기 / 국제문제연구소 / 기독교윤리실천시민연합 / 나눔의집 / 나와우리 / 노동인권회관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인권목회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새움터 / 서울장애인연맹 / 서울조선족교회 / 영등포산업선교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재외한인학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대협동우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진보정당창당추진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진보당 / 포럼2001 / 푸른영상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상 가나다 순, 총64개 단체)

동포차별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6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서명)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광주시민연대 / 광주인권지기 / 국제문제연구소 / 기독교윤리실천시민연합 / 나눔의집 / 나와우리 / 노동인권회관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인권목회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새움터 / 서울장애인연맹 / 서울조선족교회 / 영등포산업선교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재외한인학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대협동우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진보정당창당추진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진보당 / 포럼2001 / 푸른영상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상 가나다 순, 총64개 단체)

- 수 신 각 언론사 / 방송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동포차별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
- 제 목 64개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법안철회요구, 대통령거부권행사촉구(총 7쪽)
- 일 시 1999. 8. 17 (화).
- 연 락 KIN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담당 : 사무국장 배덕호 T. 02-708-4327 / 011-660-3143

보 도 자 료

64개 시민사회단체, '동포차별법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통과 해외동포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공동서한 채택

1999. 8. 17(화).

1. 64개 시민사회단체는 8월 1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지난 8월 12일 국회본회의를 통

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재중, 재러, 재일동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2.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법안은 550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권리 확대라는 근본취지에 역행하여, 해외동포의 과반수에 이르는 300만 재중, 재러, 재일 동포를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지적한 후, 이러한 ‘동포차별법안’이 “동포사회의 충분한 의사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동포사회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또한 이들은, “법무부와 여야국회의원들이 이번 해외동포특별법안이 국내외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미주지역 동포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부자동포만 우리 동포로 규정하고 일제시기 강제징용과 독립투쟁의 고난의 역사를 함께 한 동족을 철저히 배제하는 반역사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을 위해, 정부부처, 해외동포사회와 국내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법제정논의기구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

4. 64개 시민사회단체는 재외동포법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해외동포 단체 및 인사들의 서명운동, 법안 철회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문제의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발효시 개정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박형규 목사,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태호 KIN 대표, 이해학 민화협 공동의장, 효림 스님, 정한숙 좋은벗들 사무국장외 다수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참여했다.

※ 별첨. 64개 단체 공동성명 및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

각국에서 온 서한 및 성명서

1. 독일에서 온 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대통령님!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차별과 탄압속에서 살아오신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지난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에 반해 차별과 분열하는 법안이 되어 통과되어 재외동포명동성당농성단이 구성되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차별과 탄압속에서 살아오신 대통령님! 재독한인 동포(광부, 간호사, 조선공)들도 술한 차별과 탄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차별의 아픔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민족도 아닌 자기민족으로부터 차별 받는다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자랑스런 대통령님! 우리는 50여년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면서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에는 늘 민주화와 통일의 상징인 김대중 선생을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 차별을 받을 때마다 어서 내조국이 민주화되어 그 누구보다도 차별과 탄압을 받아오신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어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차별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염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자기민족을 차별하고 분열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실망이 큼니다.

대통령님! 해외동포들과 민족을 법안 선포로 차별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역사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8월 15일

최 정규 총무 사단법인 재독한국민중문화모임

2. 미국에서 온 서한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U.C. Berkeley (캘리포니아버클리종합대학) 한국학위원회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설마 국정일에 힘드신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 시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법률에 불공평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학 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올리자면 저희 대학 동아리는 13년전, U.C. Berkeley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한인 학생회로써 교포 2세와 이민 자녀들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5공화국과 6공화국의 독재 정치에 반대해 오며 매주 한 번씩,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관심 하나만으로 한국의 현대사와 이민사를 중심으로 학습 토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 동포법은 이민사를 공부해오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중의 하나였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오직 조국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민 1세들에게 있어서 이 법안은 분명히 많은 혜택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민 2세들인 저희조차도 지적하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바로 우리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들의 목숨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해외로 나가 독립 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배제시키는 조항인 것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전, 중국, 러시아 등지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 2세, 3세 분들께서는 독립 운동가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을 당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를 볼 때, 미국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편히 살아가는 저희들보다는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먼저 누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재외 동포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조차도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킨 국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께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 법안에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미국에 사는 저희조차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미국의 동포 사회는 숨죽이며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국, 대한민국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18일

U.C. Berkeley 한국학 위원회장 Jae Sung 및 회원 일동

3. 일본에서 온 연대성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요구해서 싸우는 국내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재외동포에게 연대와 경의의 뜻을 보냅니다.

많은 재외동포, 국내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8월 12일에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여러 부족한 점이 있으면서도 '한국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고 우리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법안이 제대로 의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것입니다. 재외동포정책을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재외동포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550만 재외동포라고 해도 역사적 경위나 국적, 거주국의 사회환경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을 만큼 각 동포사회의 현실과 과제를 잘 검토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수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많이 지적되어 있듯이 550만 재외동포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재중·재러동포를 제외한 것입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고난을 당한 재중·재러동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들을 배제한 재외동포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의 입장으로 보면 재일동포 중 약15만명을 차지하는 '조선적' 동포를 제외한 것도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미묘한 문제가 있을 지라도 민족화해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조선적' 동포의 자유왕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당초 안에 있었던 국내 국정참정권 조항이 삭제된 것에도 비판이 많습니다.

한국정부가 줄속적으로 처리된 재외동포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세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1999. 8. 25. 화

재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윤양일·김홍수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수 신 공동대표 양영미, 이택호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6호
각 언론사 기자 Tel. 82-2-708-4327 Fax. 82-2-708-4328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발 신 연대집회 주관단체(KIN,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 제 목 '27일, 재외동포법안철회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연대집회' 보도자료
- 일 시 1999. 8. 27(금).
- 연 락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T. 82-2-708-4327, F. 82-2-7084328
담당 : KIN사무국장 배덕호

보 도 자 료

'재외동포법안',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국내외 연대집회

27일(금), 12시 탑골공원, 재외동포법안철회요구 국내시민단체와
각 국 동포들 연대집회, 해외동포단체들 성명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 8. 27. 금요일 오후 12시, 탑골공원

1. 8월 27일(금) 재외동포법안철회운동 관련시민사회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은 8월 27일(금요일), 12시,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재외동포법안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국내외 연대집회를 갖고, 공포시점을 며칠 앞둔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참고 : 별첨1, 연대집회 공동성명서

2. 이 연대집회에서는 법안적용대상동포들과 배제된 동포들, 재미, 재러시아, 재일, 재중동포들이 참여하여, 동포를 차별하는 동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재독, 재일, 재미 동포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집회에는 이미 동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재중동포들이 참여하고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참고 : 별첨2, 대통령공개서한 한글 및 영문

3. 또한 동 법안에서 배제된 3개국동포들(재중, 재일, 재러시아)의 모습을 담은 사진홍보전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주관단체의 하나인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은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전국순회 사진홍보전과 시민서명운동, 그리고 해외동포사회의 연대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거부권행사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단체 공동성명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단체는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8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어 현재 대통령 공포시점을 불과 며칠 앞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위하여 대통령이 긴급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국내 범시민사회단체는, 8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법안이 550만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과 권리의 확대라는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절차도 정당성을 결하고 있어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재외동포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일부터 재중동포들과 관련시민단체들은 명동성당에서 약 2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고, 19일 광화문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매주 일요일 인사동에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등 각 국 해외동포사회에 재외동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제 다수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수난을 당하던 시기, 강제로 징용되거나 이주를 강요당한 사람들, 만주와 연해주를 배경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독립투사 및 후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한 대통령거부권행사를 함께 촉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공포되기도 전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에 이주한 자만을 재외동포의 개념에 포함시킨 현 재외동포법안은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전문에 어긋난다. 또한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국적 보유여부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에게만 법에 의한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들(재중, 재러, 재일 동포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명백히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침해,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국회통과된 재외동포법안은 내용적으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절차상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각 국의 해외동포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결론적으로 정부(법무부)는 중국측 외교부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300만 해외동포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수정법안을 추진했고, 국회에서는 국민과 550만 해외동포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이틀만에 통과시켜 버렸다. 특히 국회법안 통과시 재석의원 166명 중 156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의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는 사실에서 범시민사회단체 및 해외동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550만 해외동포의 법적지위 확보 및 권리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결과적으로 부자나라의 동포들에게만 국내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 범시민

사회단체 및 각 국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제정되는 재외동포법이 300만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동포차별법'이나 부자나라의 동포들만을 위한 '부자나라동포 국내투자유치법'이 아닌 역사성과 형평성에 맞는 평등한 해외동포법으로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 시절 차별과 탄압의 부당함을 몸소 느꼈던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와 해외동포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해외동포사회를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다'는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철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역사성과 형평성에 맞는 올바른 해외동포법을 만들기 위하여, 해외동포사회와 국내시민사회, 재외동포 정부소관부처(외교통상부), 국내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및 학계가 참여하는 법제정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9. 8. 27(금).

1. 대통령거부권행사촉구에 연대서명한 64개 국내시민사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광주시민연대 / 광주인권지기 / 국제문제연구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나눔의 집 / 나와우리 / 노동인권회관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인권목회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린티어21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새움터 / 서울장애인연맹 / 서울조선종교회 / 영등포산업선교회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외국인노동자마을 /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원불교청년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재외한인학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대협동우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 정치개혁시민연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좋은벗들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지구촌나눔운동 /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 진보정당창당추진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진보당 / 포럼2001 / 푸른영상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청년연합회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한민족포럼 / 향린교회인권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이상 가나다 순, 총64개 단체)

2. 대통령거부권행사촉구에 연대서명한 국외단체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KEEP) LA /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KEEP) NY / UC Berkeley Committee for Korean Studies (CKS) / Boston Campaign for North Korean Famine Relief / Harvard Divinity School Korean/Korean American Students Association/ PESANTE-Los Angeles / John B. Duncan, Associate Professor (Korean History), UCLA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 Korean Youth & Student Union-Los Angeles, 제일한국청년 연합 (제일한청련) / 제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민권협) / 독일 백림노동교실 / 사단법인 재독한국민중문화모임

<별첨2> Civic groups request for a Presidential veto (Summary)

Veto the "Bill of Entrance and Legal Status for Overseas Koreans"

Dear Mr. President,

5.5 million overseas Koreans live throughout the world. The passage of a special bill concerning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reflects the current administration's growing interest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The bill which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12, 1999 contains a critical clause (inclusion of only those with S. Korean nationality) which goes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the bill to grant legal status and certain rights to the 5.5 million overseas Koreans. Moreover, the expeditious manner in which the bill was passed is unacceptable.

1. This bill excludes over half of the 5.5 million overseas Koreans. In this bill, overseas Koreans are defined as those who formerly had Korean nationality, their children, and those who are included in a special presidential order. Thus, 2 million Korean-Chinese, half a million Korean-Russians, and 150,000 Korean Residents in Japan, many of whom left b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re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provisions of this bill.

Considering that most Korean-Chinese and Korean-Russians are off-spring of independent resistance fighters who struggled in Manchuria and Siberia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they are truly the unsung heroes of this S. Korean state. We must ask what the intent of the the bill is and why these people are being ex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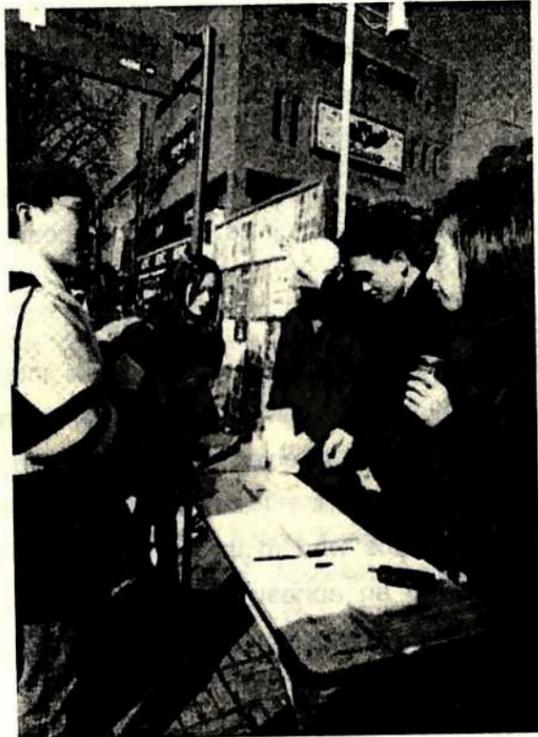
2. The process of passing this bill goes against its original intent. This bill was presented to Congress and unilaterally passed without consulting the 5.5 million overseas Koreans who will be directly affected by this bill and without informing the public of the debate around this bill. There are no provisions for overseas Korean-Chinese and Korean-Russians who might be excluded from this bill if the original clauses are passed to file an appeal. The Ministry of Justice drafted the bill arbitrarily which was subsequently passed by Congress.

During this time, civic groups expressed their concerns t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but they did not respond to our concerns. Although civic groups announced a joint statement of disapproval, followed the legislative procedure to appeal, and urged countermeasures to the bill,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did not give consideration to our opinions. And finally, this bill passed through the subcommittee session on August 11 and the main session on August 12.

Mr. President!

Over half of the Korean overseas community are excluded by the so-called "Overseas Koreans Bill." In particular, is it jus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clude and deprive the over 3 million Korean-Chinese, Korean-Russians,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excluding over 3 million overseas Koreans, are you not forgetting your own people and our country's political struggles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e urge you to consider seriously the impact of such an exclusionary policy and hope that you will veto the so-called "Overseas Koreans Bill."

1999. 8.27.



관련 기사

〈재외동포법〉 조선족 왜 분노하나

문화일보 1999-08-28 05면 () 03판 해설 2386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이 대통령의 서명,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족 중국동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재외동포법안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취지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국제관례와 외교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이 법의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가 수습책으로 조선족 중국 동포와 러시아 거주 고려인 등에 대해서는 법제정과는 별도로 향후 각종 정책적 혜택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당사자인 조선족과 시민단체 등은 불신을 나타내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조선족 등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과연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잘사는 해외동포만 동포이고, 못사는 동포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됩니까."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2일 태평양 건너편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포사회에서는 숙원사업이 이뤄졌다고 축하파티가 열린 반면, 이쪽 명동성당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교포 등이 좌절감을 안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포사회를 분열시키는 불평등한 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합니다."

27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 반대집회 현장에는 이같은 탄식과 분노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못받게 되는데 대한 아쉬움보다 '한 핏줄'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배신감과 설움을 토로했다.

이 법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청구한 조선족 조연섭(趙淵燮, 75) 문현순(文賢順, 45) 전미라(田美羅, 42)씨는 "중국에서도 이렇게는 대접받지 않았는데 동족이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 게 한스러울 뿐"이라고 하소연하며 "이 법은 '재미교포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96년 중국에서 건너와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일해왔다는 장우향(32)씨도 "이 나라가 싫다고 미국에 건너가 돈을 많이 번 재미교포는 동포이고, 일제 징집을 피해 만주·연해주 등지로 건너간 항일투쟁가의 가난한 후손들은 동포로 취급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재외동포법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미 성명 등을 통해 "항일투쟁의 주역과 자손들을 동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역사의 공백기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법 관례와 외교마찰 우려를 이유로 조선족, 고려인 등을 배제했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을 '허구와 기만'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의 배덕호(裵德鎬) 사무국장은 이날 "정부가 국제법상의 '과거국적주의'를 내세워 조선족 등을 재외동포 규정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나 48년 제정된 국제법에는 외국의 입법례처럼 '최초 국적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48년 이전에 국외로 나간 동포를 최초 국적자에서 제외할 근거

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정에 앞서 국적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 등의 반발로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정부주장에 대해서도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金海性)목사는 "중국도 최근 혈통주의에 따라 강력한 화교정책을 펴고 있다"며 "알아보니 중국의 항의도 거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물러선다면 사대주의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졸속 법제정 강행은 가난한 조선족 동포가 대거 몰려와 초래될 노동시장 교란과 실업문제 악화를 막고 '부자교포' 등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계산된 입법"이라고 단정지었다.

정부가 조선족 등의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조선족들은 극단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보완조치로 공인한 각종 정책적 혜택에 대해서도 조선족들은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두번 죽이려는 셈이나"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확신한다"며 "법권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기 전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후에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다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성목사는 "조선족을 재외동포로 인정할 경우 당장은 조선족들의 입국러시로 과도기적 혼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나 출입국절차나 비자발급 조절 등의 조치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며 "현재 14만명 가량에 달하는 국내 조선족 불법체류자 문제를 마냥 회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상협기자>

부자나라 동포만 우리 핏줄?

문화일보 1999-08-06 27면 (특집) 03판 뉴스 904자

"해외동포의 기준은 혈연과 조국애에 있는 것이지 조국에 대한 투자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재외동포 등 국내에 대한 투자 능력이 있는 일부 선진국의 동포에게만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임인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은 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49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부자나라 동포들에게만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해외동포특별법의 동포차별 독소조항을 폐지하라"는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와 여야 정당에 발송하는 한편 법안 통과시 헌법소원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원한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핏줄로나 정서적으로 명백히 동포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난 조선족(중국동포), 고려인(러시아 한인), 재일조선적(在日朝鮮籍·무국적 재일동포) 등은 해외동포에서 제외되고 재미동포등 일부 선진국 교포만 재외동포가 된다.

특히 재일 조선적은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간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동포들과 그 후손들로 일본정부가 이들에 대해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하고 있는 반면 모국인 대한민국은 이들을 해외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20만명에 이르는 해외입양아도 재외동포에서 제외돼 한국에 입국할 경우 비자 경신을 위해 3개월에 한번씩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에서 누락되는 재외동포가 조선족 2백만명과 19세기 말 이주노동자 등을 합쳐 3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영출기자>

지구촌동포청년연대 '킨'을 아십니까

한겨레신문 1999-05-26 19면 () 01판 기획.연재 1464자

퀴즈 다음 중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1>조선족(중국동포) <2>고려인(러시아 한인) <3>재일조선적(在日朝鮮籍) <4>입양아 <5>미국 시민권자인 재미동포.

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정답은 <5>번이다. 이 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핏줄로나 정서적으로 명백히 동포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한반도를 떠난 <1><2><3>과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4>는 재외동포가 아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입양인 비자캠페인'이라는 이색 행사가 열렸다. 부모의 나라 한국이 알고싶어 돌아왔지만,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석달에 한번씩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본·홍콩 등지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입양인들의 처지를 알려 법개정을 청원하기 위한 행사다. 이 행사는 입양인들과 '킨'(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이 기획해 치렀다.

해외동포 젊은이와 시민단체 활동가, 직장인 등 50여명의 젊은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킨'(www.kin.or.kr)은 지구촌 동포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동포사회의 평화와 인권 #남북평화통일 실현과 #지구촌 공동체문제 연대운동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27일 창립했다.

142개국에 퍼져 사는 554만여명의 해외동포 중 조선족은 200만, 고려인 45만, 무국적 재일동포(조선적)는 15만 여명에 이른다. 입양된 젊은이도 20만여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외동포 범주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러시아·중국·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킨'은 요즘 '15만 무국적 재일동포 국내입국제한 철폐'운동을 펼치고 있다. '재일 조선적'은 일제시대 일본에 끌려가 지금껏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과 그 후손)이다. 이들은 무국적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하고 있어 지구촌 190여개의 국가 중 7개국만 빼고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일곱 나라에 조선적의 모국이자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한국이 들어 있다.

이 단체 배덕호 사무국장은 "우리의 민족주의는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킨'이 재외동포법의 '몰역사성'을 비판하며 두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다문화주의에 기초를 두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한국인으로 살기 위한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교육·연대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킨'은 2만5000~3만여 국내거주 해외동포 유학생과 입양인 등 문화와 정서가 유사한 지구촌의 진보적 동포청년 네트워크를 이뤄 '전지구적 연대운동'을 펼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이제훈 기자

[우리 NGO는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www.donga.com)

기사 분야 : NGO

등록 일자 : 2000/07/06(목) 11:08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입니다. KIN(킨)은 '국내외 다문화공존 및 소수민족(특히 해외동포) 인권·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99년 2월에 창립한 단체로, 현재 약 100여명의 국내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알쏭달쏭 퀴즈를 이해하는 네티즌 여러분들은 KIN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중 법적으로 해외동포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① 미국시민권자인 재미동포 ② 조선족(중국동포) ③ 재일조선적(在日朝鮮籍) ④ 고려인(구소련지역 한인동포, 일명 까레이스키)

정답은 ②③④입니다.

현재 142개국에 걸쳐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해외동포는 약 560만으로 추산되며 인구대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중국동포 조선족 약 220만명, 국적이 없는 재일동포 조선적 약 15만명과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 수십만, 구소련지역 한인동포 고려인 약 50만명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더 이상 해외동포가 아니며 따라서 법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타의에 의해 한반도를 떠난 대다수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해외동포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KIN은 이 법을 몰역사적이고 불평등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재외(在外)동포법'이 아닌 '300만 제외(除外) 동포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KIN은 재미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한국사회체험교육프로그램인 KEEP(Korean Exposure & Education Program), 해외동포이슈 및 국내소수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16차 KIN월례포럼, 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 캠페인,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국내 입국자유 캠페인, 재중·재일동포 실태조사, 한일청년포럼 공동등의 다양한 활동을 창립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2000년 KIN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현지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미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제6차 KEEP을 주관하며, 소수민족으로 사는 한인사회의 체험을 통해 소수민족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2000년 KINEX-America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 KIN은 세계 권역별 KEEP / KINEX 교류연대프로그램 활성화, 해외동포 인권평화센터 설립,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한반도 자유왕래 캠페인, 국내외 사회적 소수자 그룹과 공동이슈 중심의 국제캠페인,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각 국의 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정기 Korean International Forum 및 Korean International Festival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덕호/KIN 사무국장 kin@kin.or.kr

[피플파워 NGO] '지구촌동포청년연대'

한국경제신문 게재일:2000-07-24

한국경제신문(시리즈/연재)

◇99년 2월 창립

◇KEEP 프로그램 주관

◇해외동포와 국내외국민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월례포럼진행

◇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 및 무국적 재일동포 입국자유 촉구 캠페인

◇중국 및 일본 재외동포실태 조사

◇홈페이지:www.kin.or.kr

◇주소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전자우편:kin@kin.or.kr

"다문화 공존 및 소수민족 인권·평화 실현"

다소 생소한 구호지만 지극히 배타적인 한국사회를 바꿔보고자 만들어진 단체가 작으나 뜻깊은 시작을 알리며 내세운 지향점이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는 99년 2월에 창립한 단체로 현재 약 1백여명의 국내외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KIN은 1.5세대나 2세대 재미동포청년들의 한국사회체험교육프로그램인 KEEP(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기좋은"조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한국 현실을 보며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 뜻을 모아 출발했다.

현재 해외동포는 1백42개국에 걸쳐 약 5백60만으로 추산된다.

한국 인구대비 12%로 인구대비 비율로는 세계 1위다.

이들 중 중국동포 조선족이 약 2백20만명,국적이 없는 재일동포 조선적 약 15만명,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 수십만, 구소련지역 한인동포 고려인 약 50만명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더 이상 해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타의에 의해 고국을 등졌던 이들은 현지의 차별보다도 다시 자신들을 못본체하는 한국의 정책이 더 아픈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IN은 이 법을 몰역사적이고 불평등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재외동포법"이 아닌 "3백만 제외 동포법"으로 명명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IN의 회원들은 창립이전부터 재미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한국사회체험교육프로그램인 KEEP,해외동포이슈 및 국내소수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16차 KIN월례포럼,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 캠페인,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국내 입국자유 캠페인,재중·재일동포 실태조사,한일청년포럼 공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올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현지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보름간의 일정으로 미주한인사회의 체험을 통해 소수민족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인 KINEX-America를 미국에서 치렀다.

첫 행사였지만 국경지역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 히스패닉계통의 소수민족들을 위한 기업내 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소개받는 등의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였다고 KIN의 배덕호 사무국장은 전했다.

내달에는 3주간 일정으로 재미동포청년들이 참여하는 제6차 KEEP이 실시된다.

참여하는 약 15명의 재미동포 청년들은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고 민가협 어머니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좀더 사실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영미씨와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씨가 공동대표로 있으며 배덕호 사무국장이 안살림을 꾸리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자료모음

- KIN 소개
- KINEX-America
- KEEP 소개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소개

<창립배경>

KIN은 지난 99년 2월 창립되어 동포청년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동포사회 및 지구촌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입니다. KIN은 지난 95년부터 '해외동포청년들의 한국 방문 및 한국시민사회운동 탐방'을 주 내용으로 하는 KEEP(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여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창립하였고 최근에는 해외동포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립목적과 활동방향>

KIN은 "지구촌 동포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진보적 네트워크"로서 국내외 동포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국 동포사회의 평화와 인권의 실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지구촌공동체 실현에 연대하기 위해" 창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각국 동포간 교류 사업
- 동포사회 및 지구촌 공동체 관련 교육 홍보 사업
- 동포지원협력사업 및 국제연대사업
- 동포사회 관련 정책 연구 및 대안 개발

<회원>

국내외 거주 각국 해외동포 및 국내청년 100여명
(가입문의 : KIN사무실 02-735-4327, kin@kin.or.kr)

<주요활동>

- ▶ KINACTION - KIN기획사업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
 - 무국적 재일동포(조선적 동포) 국내 자유왕래 캠페인
 - 해외입양인 비자캠페인
 - 국내외 사회적 소수자 그룹과의 연대활동
- ▶ KINEX - KIN교류사업부
 - KEEP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 95년 여름이후 총 6회
 - 한일청년학생포럼 ('Youth Forum') : 97년, 98년, 99년 공동주관단체 활동
 - 지구촌 각국 해외동포권 교류연대프로그램(KINEX-nations) 운영 중
 - 각국 연구분과 활동
- ▶ KIN사무국 - KIN활동 총괄

<KIN 과거 주요활동 역사>

'99년 실적

- 국내 해외동포-국내청년간 공개포럼 7회 개최
- 조선적 재일동포 권리 캠페인(99.1-3월)
- 해외동포법 캠페인 (99. 6월-8월)
- 4차 한일청년학생포럼 공동주최 (99. 6월 동경)
- 99KEEP(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재미동포한국체험5차프로그램 99. 7-8월)
- 조선족 실태 중국 현지조사팀 파견 (99. 10월)
- 해외동포사진전 2회 개최(1회단독,1회공동)
- 언어문화교실 (99.10-영어, 중국어)
- 미국·일본·중국 교류연대 분과 운영

2000년 계획

- KINEX-America(미국현지 동포사회 체험교육 프로그램) 6월 말 ~ 7월 초
- KEEP2000(재미동포한국체험 6차 교육프로그램) 7월 말 ~ 8월 중순
- 한일청년포럼(한일청년 학술교류 행사) 6개 주관단체 참여
- KINEX-Japan(일본현지 동포사회 체험교육 프로그램) 8월 초순 ~ 중순
- 국내 해외동포-국내청년간 공개포럼 총12회 개최
- 언어문화교실 (시민단체간사 영어지원사업) 상시활동
- 한국어문화교실 (동포 및 이주노동자 교육) 상시활동
- 재외동포법 캠페인 - 상시활동

KIN 과거 활동기구 주요활동

1. KIN포럼(KINForum)

- 98년 7월부터 매달 개최, 총 15회. 평균참여자 약 20여명
- 장소 : 참여연대 대강당
- 지금까지의 주제 :
 - 1) 1회 (98년 7월), "팔려간 동포, 팔려온 동포 - 독일이주노동자와 중국 조선족 실태와 역사적 삶"
 - 2) 2회 (98년 8월), "북한식량난과 조·중 국경지대의 난민실태"

- 3) 3회 (98년 9월), "해외입양인들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삶"
- 4) 4회 (98년 10월), "혼혈아들의 삶- 동두천지역을 중심으로"
- 5) 5회 (98년 11월), "일본에서 재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
 - 15만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들의 역사적 삶"
- 6) 6회 (98년 12월), "감금당한 43년의 인생" - 국가보안법 50년 특별 토론회
- 7) 7회 (99년 1월), "변화 속의 코리안 아메리칸" - 92년 4·29 LA의 현실과 의미
- 8) 8회 (99년 2월),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 9) 9회 (99년 3월), "구 소련내의 러시아 한인 실태"
- 10) 10회 (99년 4월), "고마를 통해서 본 한국의 Feminism"
- 11) 11회 (99년 5월), "태고적 신비, 동강 - 현재환경포럼"
- 12) 12회 (99년 6월), "주한미군, 코스보사태, 그리고 한반도평화"
- 13) 13회 (99년 7월), "재외동포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14) 14회 (2000년 1월), "탈북여성들의 남북한에서의 삶"
- 15) 15회 (2000년 2월), "외국인여성들의 국내 성매매실태"

2. KIN캠페인(KINCampaign) : KIN사무국과 회원들의 임시팀 구성으로 운영됨.

현재 KIN웹사이트에서 서명운동 진행중.

- 무국적재일동포 -조선적(朝鮮籍)- 국내입국자유왕래캠페인
 - 98년 12월 7일 시작, 3회 인권영화제에 KIN회원 조선적문제를 다룬 "입국금지령" 출품
 - 99년 2월 해화동 거리캠페인 - 시민서명캠페인 약 800여명 서명작업 동참
 - 99년 3월 캠페인 설명회, 약 40인 참여(비디오관람, 해외동포관련 주제그림 그리기 5점)
 - 99년 5월 해화동 시민서명캠페인
 - 99년 6월부터 재외동포법캠페인으로 통합
- 해외입양인비자캠페인
 - 99년 5월 5일 해화동 비자캠페인 - 시민서명운동, 약 1200명 시민 서명작업 동참
- 재외동포법안캠페인
 - 99년 6월부터 준비작업
 - 99년 7월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긴급토론회 개최, 약 40여명 참석, 올바른 해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KIN캠페인단 제안
 - 8월 10일 '평등한 해외동포법 제정을 위한 KIN캠페인단' 구성.

- 99년 8월 15일 이후 인사동 사진전 개최, "재외동포법안에서 배제된 3개국동포사진전"
- 3개국동포 사진엽서 제작, 홍보
- 99년 8월 7일 천안 시민서명캠페인활동에서 시작 9월 3일까지 시민서명운동, 매스컴 홍보, 캠페인단 조직화, 64개 국내시민사회단체 연대서명활동, 해외동포사회 법안 홍보활동, 해외연대 서명 조직화 등
- 99년 9월 3일 이후, 공포법안 개정운동 준비 - 입법청원활동준비, 시민서명운동 등
- 현재 동법개정캠페인은 KIN사무국과 자원활동가들, KIN교류사업부 중국분과를 중심으로 기획 예정임.

■ <교토40번지 - 재일동포1세> 사진전 후원활동

- 11월 28일 ~ 12월 4일 1주일간 문화일보갤러리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현재 교토 인근지역 가모江邊의 히가시구조40번지에서 사시는 재일동포 1세분들의 삶의 실태를 담은 사진전으로 5개 단체(KIN, (사)좋은벗들, 민족문제연구소, 나눔의집,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공동후원으로 개최 되었음.
- 현지 히가시구조40번지와 징병한인촌인, 우토로지역 1주일간의 실태조사 다녀옴.

3. KIN교류사업부(KINEX)

- 5월 「광화문 차 없는날」 참여
 - 환경관련 어린이 즉석그림그리기 대회(약 50점 보관하고 있음)
- 「제3차 한국-재일-일본 청년학생포럼」 참여
 - 99년 8월 4일 ~ 8월 9일 일본현지방문
 - KIN회원 중 4인이 참여, 조선적(무국적재일동포)관련 주제발표
- '99KEEP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매년 7월말~ 8월 중순, 약 3주 기간활동. 현재 5년째 진행 중인, 재일동포청년들의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 탐방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변화하는 시민사회단체활동, 다양한 사회이슈, 그리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상호교육하는 정체성있는 프로그램.
 - 기간 : 8월 3일 ~ 8월 23일,
 - 프로그램 참여자 : 미 동부, 서부, 기타 다양한 지역의 재일동포청년들 중 선발된 9인 참여
 - 국내참여단체 : 23개 대표적 국내 시민사회단체 방문 및 시민운동가와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 KEEP 국내지원활동가 30여명(시민, 학생, 사회단체활동가, KIN회원) 참여
 - 8월 재외동포법캠페인 연대활동 참여

■ KIN각 국 분과모임 구성

- 미국분과를 모델로 점차 중국, 일본, 독일, CIS, 유럽, 남미 등 각 국 분과를 구성하고 각 국특성에 따른 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분과의 활동은 국내해외동포청년들과의 교류, 각 국 해외동포 인권 및 평화관련 연구토론, 자료집 제작, KIN 각국체험프로그램(KIN Overseas Exposure Program) 기획, 추진

4. KIN문화사업부(KINCulture) :

- KIN언어문화교실 : 국내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어지원활동.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KIN해외체험교육프로그램의 예비 참여자 발굴과 신규회원조직의 목적.
 - 영어, 중국어, 일어교실을 운영했었으나 현재는 영어교실만을 운영중임
 - 영어문화교실
 - 영어권 해외동포들이 자원강사로 활동.
 - 주 1회 2시간, 화 /목, 초급 /중급반 운영중이며 전교조팀 영어반을 운영 중임.
- KIN사진문화교실
 - 사진강좌 화요일 3강좌 10시, 2시, 7시
 - 사진강의 : 조여권(KIN회원), 재외동포법관련 사진전 활동

5. KIN한국어학당

- 국내의 재외동포청년들과 외국청년, 외국인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한국어교실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사랑방 성격의 활동기구
-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국문학과 학생들이 자원 강사로 참여함.
- 10주단위로 운영.



KIN 미국교육연대프로그램 KINEX-America

1. 지향점

KIN은 KINEX의 지향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문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시민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인종끼리의 접촉도 많아지는데 이 때문에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민의 현장이며, 때문에 KINEX는 지구촌의 동포들의 삶을 체험하면서 이를 느껴보기로 했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 그 동안 사회적 소수자들은 예전부터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KINEX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KINEX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적 지구촌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서로의 상대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문화적 지구촌 네트워크를 양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구촌 곳곳의 한인 단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역사

KINEX는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KEEP)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KEEP는 매년 재미 청년 교포들을 상대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민중들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 왔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면서 재미동포들은 한국의 다차원적인 역사관계, 한반도의 정의 실현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KINEX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직접 해외 동포들의 삶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소수 민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일정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이 진행됨)

- 7월 1일 김포를 떠나서 San-Francisco에 도착 • San-Francisco : CKS와의 간담회, KCCEB 한인리더십 프로그램 체험, CTWO 한인리더십 프로그램 체험 • 7월 5일 San-Francisco에서 LA로 이동
- Los Angeles : 6일 KEEP LA Committee 저녁식사·간담회, 7일 NAKASEC(미주한인봉사협의회) 방문, 8일 민족학교 방문, 9일 어린이뿌리학교 프로그램 체험, 10일 APALA와 KIWA 방문 및 오리엔테이션, 11일 KYCC와 AGEND 방문 및 오리엔테이션, 12일 CICEP 방문 및 오리엔테이션, 13일 멕시코 국경지대의 다국적 기업 공장 방문 및 이주노동자 면담 • 7월 14일 : 2주 동안의 KINEX활동을 최종 정리
- 7월 15일 : LA국제 공항을 출발 서울 도착

4. 이후 활동

KINEX-America는 궁극적으로 KINEX의 지향을 따른다. 따라서 KINEX-America는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향후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가 형성된 지구촌 곳곳을 방문하는 것이 활동방향이다.

○ 1단계 : KINEX-America 보고대회

탐구목적에 입각하여 평가를 진행한 후, 2000년 7월 말까지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 2단계 : 국내 이주노동 문제와 미국 소수민족 문제와의 비교연구

보고대회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미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국내 이주노동 문제를 이와 비교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2000년 11월 말경 '국내 이주노동 문제와 미국 소수민족 문제와의 비교연구'란 주제로 제1차 공개워크숍을 개최한다.

○ 3단계 : 국내 소수민족 문제, 한국사회의 발전 및 KINEX의 방향 모색

2단계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국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명하고, 나아가 KINEX의 방향을 모색한다. 2001년 2월 말경 '국내 소수민족 문제와 한국사회의 발전'이란 주제로 제2차 공개워크숍을 개최한다.

○ 4단계 : 제2의 KINEX-Nation 추진

2001년 1월경 탐방 국가를 선정하고 KINEX-Nation Team을 결성하여, 2001년 7-8월을 목표로 제2의 KINEX를 추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매년 KINEX-Nation Team을 결성하여 제3의, 제4의 KINEX를 추진한다.

1. GOALS

KINEX-America has three main goals:

First, we want to build a world where there is no cultural and racial discrimination. Today globalization brings many different people in contact with each other. Consequently, conflicts can occur and intensify. This is experienced in the world of emigrants, and we, KINEX feel that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experience the lives of our fellow countrymen.

Second, we long for a society where social-minorities can have their human rights and live in a peaceful world. Up until now, social-minoritie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However for the coexistence of mankind, KINEX feels that it is important that all people are treated equally. We will continually try to work in solidarity with social-minorities all over the world.

Last but not least, KINEX is building a multicultural Global-Network. This Global-Network aims not onl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but also to actively accept various cultures. To successfully make this Network we will contact Korean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2. HISTORY

KINEX originated from the **Korean Exposure and Education Program (KEEP)**. KEEP has sponsored many programs for Korean emigrants to America that teach them about Korea's history and struggle for democracy. Also, this program helps youth experience what their homeland was like. During the program, KEEP participants met with Korean laborers and farmers and learned about the multi-dimensional historical views of Koreans and the struggle for justice in the Korean Peninsula. KINEX got their idea from this and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lives of the minority races by directly experiencing the lives of emigrants.

3. SCHEDULE

Young Hee Kim and Jeehoon Kang will visit many racial minority organizations during this two week program - from July 1st to July 15th.

- Depart from Kimpo Aripore and arrive in San-Francisco on the 1st of July
- Schedule in San-Francisco : a meeting with CKS, the Korean leadership program of KCCEB and CTWOand so on....
- Move from San-Francisco to LA on July 5th.
- Schedule in LA : dinner and meeting with KEEP LA Committee(July 6th), visit NAKASEC(July 7th), visit Nation-school(July 8th), experience Children-Root school(July 9th), visit and have orientation with APALA and KIWA(July 10th), visit and have orientation with KYCC and AGEND(July 11th), visit and have orientation with CICEP(July 12th), visit a multinational corperation factory and meet emigrant laborers(July 13th)..... and so forth.....
- July 14th : final discussion about our two-week program
- Depart LA National Airport and return to Kimpo

4. AFTER THE ACTIVITIES

KINEX-America's ultimate purpose is similar to what KINEX is trying to accomplish. This means that what KINEX-America will do after coming back to Korea will be more important than what we did during our exposure program in America.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visit Korean organizations not only in America but all over the world.

○ Step 1 : Reports of KINEX-America

Based on our experiences during our trip, we will have a meeting about our trip at the end of July.

○ Step 2 : Compare and research about domestic emigrant laborer problems and American racial minority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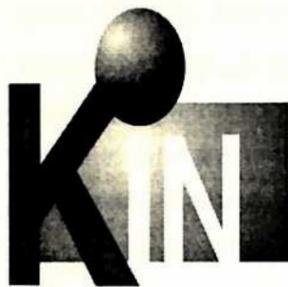
Based on what we discussed in the exposure reports, we will discuss America's minority race problems and compare these problem with domestic emigrant race problems. In November 2000, we will open our first work-shop on the subject 'Comparing and researching domestic emigrant labor problems and American minority-race problems'

○ Step 3 : Discuss domestic minority race problems, and evaluate the future direction of KINEX

On the issues discussed in step 2, we will study about Korea's growth in the meaning of emigration and along with this search for a direction of KINEX. In February 2001, we will open a second work-shop about 'Domestic minority race problems and Korea's growth.

○ Step 4 : promote the second KINEX-Nation

In January 2001, choose a country to go to and put together a team for KINEX-Nation. With this goal, we will make a second KINEX in July and August 2001. We also plan to have a third and fourth KINEX program and eventually, have one each year.



Korean International Network(KIN)

- Tel. +82-2-735-4327 ■ Fax. +82-2-735-4328
- Web-site www.kin.or.kr ■ E-mail kin@kin.or.kr
- Address (110-071) Rm.503, Samrok Bldg., 171, Dangju-Dong, Chongno-Gu, Seoul

KEEP 소개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

1. 목적

KEEP은 미국 전역의 재미동포 청년들에게 한국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대중들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참가자들은 한국의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 여성, 학생 그리고 여러 소외 계층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과 경험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KEEP은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실현,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 한미간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갖고자 합니다.

2. 역사

KEEP은 1994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서울의 재미동포 활동가들에 의해서 처음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대학당국과 한국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Summer Program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모색되었습니다. 매년 한국의 민중과 역사, 문화, 정치에 관심 있는 수백 명의 학생 및 청년들이, 기존의 대학이나 한국정부에 의해 마련되는 Summer Program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들에게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과 역사를 보여주기도는 오히려 이들의 관심을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머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KEEP은 기존의 방문 프로그램과는 달리 새로운 체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적 토론 및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KEEP 참가자들은 참가자 서로에 대해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활동과 사람들에 대해 진솔하게 배우게 됩니다. KEEP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넓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미국 전역에서 모집합니다.

3. 일정 : 매년 7월말~ 8월중순 사이 3주동안 진행됩니다.....

- LA, 참가자 사전 Orientation - 2박 3일
- 1~2일간 한국에서의 Orientation Seminar : 노동, 여성, 인권, 국제연대, 한국역사 등 시민사회단체 체험·방문 활동 내용
- 노동, 여성, 북한동포돕기, 정신대할머니, 해외입양인, 기지촌여성활동, 시민운동, 외국인노동자, 문화운동, IMF 등의 주제
- 광주방문활동 - 망월동묘역, 광주지역단체탐방
- 한국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농촌활동 : 약 3~4일

4. 프로그램

농활체험시 KEEP 참가자들은 농민들과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령 광주와 같은 지역을 방문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참가자들은 여성단체, 노동조합, 환경단체 그리고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가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게 됩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LA에서의 왕복 비행경비를 포함하여 모두 재미동포 참가자들의 개인참가비로 진행됩니다. 실제 프로그램 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이후에는 귀국날짜를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남는 KEEP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진보적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기획 및 준비

현재 KEEP을 준비하기 위해 New York과 Los Angeles, 그리고 Seoul에 3개의 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EEP web-site(인터넷)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keep.org>)

KEEP-Seoul 준비위원회 /문의 :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사무실

- Tel. (02)735-4327 ■ Fax. (02)735-4328 ■ E-mail kin@kin.or.k